

2015년도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하재

2015년도 한국국토정보공사 □□ 종합감사 결과보고

2015. 12.



목 차

I. 감사실시 개요	1
1. 감사배경 및 목적	1
2. 감사대상 기관 및 범위	1
3. 감사 중점사항	1
4. 감사기간 및 인원	1
5. 종합감사를 통한 경영환경 분석	2
II. 감사대상 기관 주요 현황	2
1. 조직 및 인력	2
2. 2015년 업무추진 실적	3
3. 2014년 업무추진 실적	3
4. 2014년 경영성과	3
III. 감사결과	4
1. 총 평	4
2. 지적사항 총괄	6
3. 분야별 지적사항 요약	6
4. 적극행정에 따른 대책	14
IV.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요구	15
1. 행정상·재정상·신분상 처분요구사항 일람표	15
2. 현지조치사항 일람표	16
V. 기타사항	16
1. 향후 처리계획 및 특기사항	16

I .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이번 감사는 새롭게 출범하는 한국국토정보공사 본사 업무 전반에 대한 심층적인 감사를 통하여 공사의 미션 및 비전을 달성을 위해 추진한 주요 정책 및 사업추진의 적정성,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법성, 조직·인력 운영의 적정성 등 업무 처리의 적정성을 점검한 결과를 시정, 개선, 지도함으로써 업무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2. 감사대상 기관 및 범위

한국국토정보공사 본사에 대하여 감사일까지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감사하였다.

3. 감사 중점사항

이번 감사는 한국국토정보공사 본사의 주요정책 및 사업추진의 적정성, 조직 및 인력운영의 적정성,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법성, 사업 분야별 고위험 리스크 관리, CEO의 경영목표 및 경영성과 달성을 위한 지원 등을 점검하여 개선사항을 도출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또한 모범사례 발굴에도 적극 노력하였다.

4. 감사기간 및 인원

2015. 11. 18.부터 같은 해 11. 24.까지 5일간 감사실 10명의 감사인력 (연인원 48명)을 투입하여 실지감사를 하였다. 이후 감사실의 감사심의조정 회의를 거쳐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5. 종합감사를 통한 경영환경 분석

한국국토정보공사 본사 종합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업무전반에 대한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강점, 취약점을 파악하여 미래 위험에 대비하고자 함.

○ 한국국토정보공사 본사 종합감사를 통한 경영환경 분석

경영환경		
구분	강점	약점
본사	- 공간정보 3개 법안 개정에 따른 사면 변경 및 역할 변화 - 전문기술 및 최신장비 보유, 국토인프라 구축을 위한 인적 역량 확보 - CEO의 진취적 경영의지	- 미래성장 전문인력,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부족 - 법령개정, 사명변경, 비전에 대한 임직원 내재화 부족 - 고비용 임금구조(낮은 생산성)
기회	공간정보 산업에 대한 정부투자 확대	
위험	법·제도적 한계로 인한 신규사업 확대에 어려움	

II. 감사대상 기관 주요 현황

1. 조직 및 인력

○ 조 직: 4개 본부(4실, 9처), 감사(1실)



○ 인 력

2015. 11. 30. 현재

구분	계	임원	본부장	국토 정보직	기획 경영직	정보 전문직	법무 국제직	기능직
정원	202	5	-	151	32	10	3	1
현원	201	4	1	150	32	10	3	1

2. 2015년 업무추진 실적

2015. 11. 30. 현재

(단위: 필/백만 원/%)

구 분 업무명	목 표		실 적		비 율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합 계	1,421,717	413,216	1,504,516	415,379	105.8	100.5
지적측량	1,039,235	402,012	1,171,682	394,398	112.7	98.1
공간정보	340,000	21,987	298,192	15,680	87.7	71.3
지적재조사	42,477	6,501	34,639	4,869	81.5	74.9
해외사업	5	2,506	3	432	60.0	17.2

3. 2014년 업무추진실적

(단위: 필/백만 원/%)

구 분 업무명	목 표		실 적		비 율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합 계	1,336,562	424,200	1,437,252	435,361	107.5	102.6
지적측량	1,098,432	380,791	1,189,735	393,252	108.3	103.3
공간정보	195,480	32,412	212,282	35,662	108.6	110.0
지적재조사	42,645	5,997	35,232	5,047	82.6	84.2
해외사업	5	5,000	3	1,400	60.0	28.0

4. 2014년 경영성과

(단위: 백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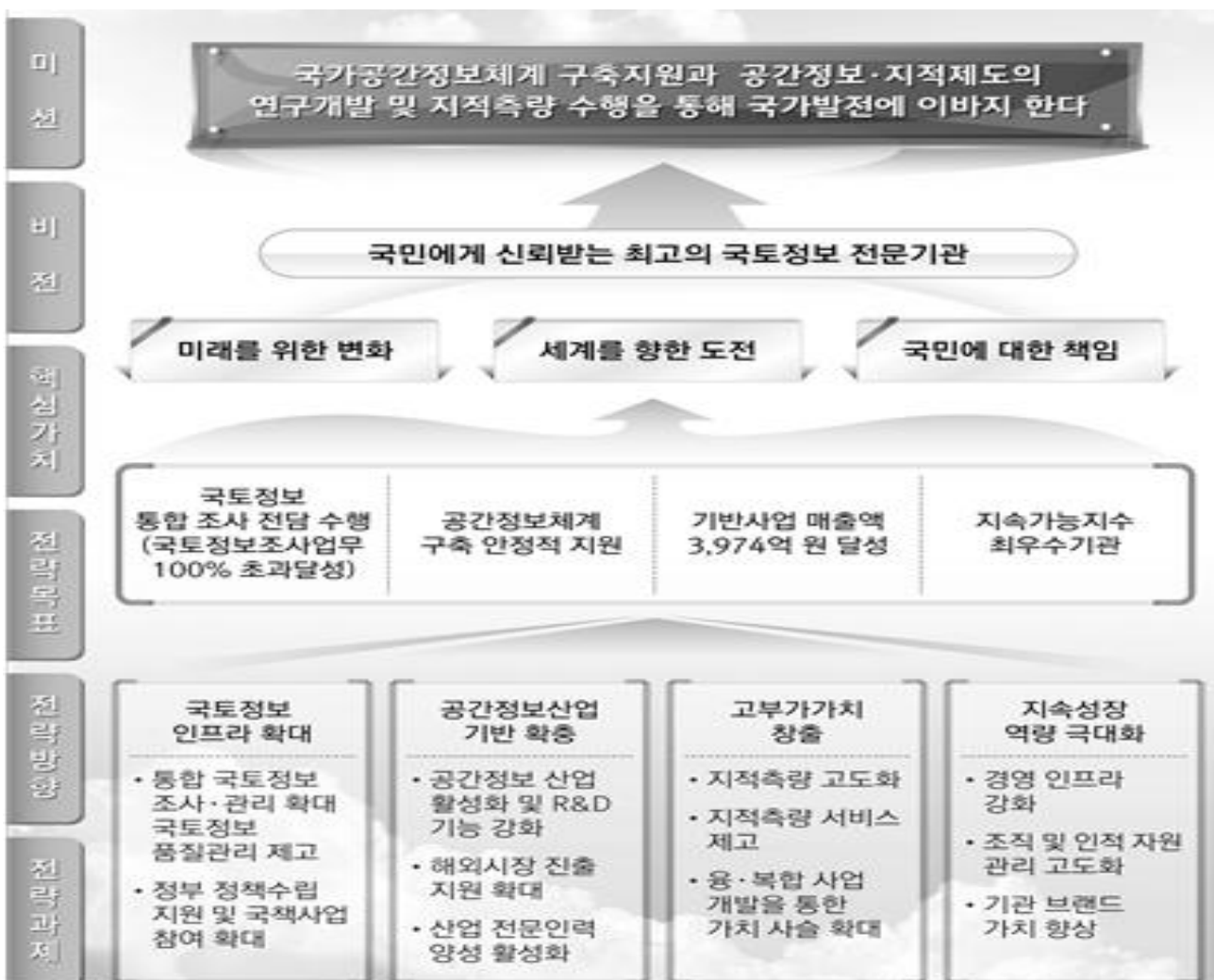
구 분	매출액	당기순이익	부채비율	신용등급	경영평가
재무성과	434,732	10,918	63.2	AA-	B(양호)

Ⅲ. 감사결과

1. 총 평

한국국토정보공사 본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대체적으로 적정하였습니다.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지원과 공간정보·지적제도의 연구개발 및 지적측량 수행을 통해 국가발전에 이바지 한다.”는 공사 미션 달성을 위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최고의 국토정보 전문기관」이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4대 전략목표, 4대 전략방향, 11개 전략과제를 추진하여 국민에게 책임을 다하는 공공기관으로써 최선의 노력의 기울이고 있다.



또한 한국국토정보공사는 2015년 CEO 경영방침에 따라 「미래」 「발상」 「가치」를 경영핵심으로 중점추진사항을 적극 실천함으로써, 2015년 대한민국 공공기관 지속지수 대상, 2015년 중소기업 혁신대상 및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과 2013년 공기업 최초로 NCS기반의 핵심직무역량 평가 모델을 도입해 “정부정책에 맞춰 우리 사회를 학벌위주에서 능력위주의 채용제도를 운영하여 ㉠㉡㉢㉣부 주관 직무능력중심 채용제도(NCS) 최우수 기관에 선정 되었으며, 이를 통해 국토정보 전문기관으로 도약하고 수요자 중심의 편리한 국토정보 제공으로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S등급(97.1점) 달성 등 정부정책의 선제적 수행으로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국가공간정보기본법」이 시행(2015. 6. 4.)됨에 따라 국가공간 정보체계에서 한 축을 담당하기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로 사명을 변경 하였다.

이에 따라 국가공간정보체계구축 지원, 공간정보·지적제도 연구개발, 지적측량 수행, 공간정보 산업진흥 등 민간기업이 수행할 수 없는 공적 영역 수행으로 보다 편리한 국토정보 제공함으로써 국민행복에 기여하고 있다.

다만, 종합감사 결과 본사에서는 전사 위기관리 운영 소홀 등 17건의 지적사항이 발생하였다.

이와 관련해서 이번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 본사에서 이루어지는 주요정책 및 사업추진의 전반적인 점검과 공간정보 및 지적측량 업무와 관련된 정책과 사업추진 등에 대한 프로세스를 강화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지적사항 총괄

(단위: 건, 명, 원)

구분	계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현지 처분	모범 사례
		통보	시정	개선	권고	추징	회수	지급	징계	문책		
건수	17 (2)	7		6	4						(2)	10
금액												

※ ()는 현지처분임.

3. 분야별 지적사항 요약

가. 기획 및 공간정보 분야

17-1
처분요구서 일련번호

전사 위기관리 운영 소홀

< 요약 >

「위기관리규정」 제15조, 제23조

1. 평상시 위험관리 소홀

- 주관부서인 실·처의 모니터링에 대한 결과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총괄부서의 평상시 위험관리가 부족함.

2. 위기 보고체계 개선 미흡

- 별다른 장애요인 없이 2015년 종합감사일 현재까지 정상운영 되지 않고 있다. 또한 현재의 위기관리매뉴얼은 조직개편과 인사이동으로 인해 변경된 조직 및 담당자로 현실화 되지 않았음.

3. 전사위기 대처현황과 연계성 미흡

-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에 대응하기 위한 2014년 「LX비상대책단」 운영과 2015년 공공기관 기능조정 등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LX경영혁신추진단」 등은 경영전략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전사적 위기대처임에도 불구하고 위기관리체계와의 연계성이 부족함.

4. 위기관리 교육현황 및 성과감사 사후조치 소홀

- 위기관리규정이 제정된 2012년 12월부터 2015년 11월 종합감사일 현재까지 3년여의 기간 동안 위기관리교육이 실시되지 않아 임직원에게 대한 위기관리능력 제고노력이 부족함.

17- 8 해외사업추진(목표, 관리 등)에 관한 사항

< 요약 >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제14조, 「정관」 제37조, 「공기업·중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2015년 현재 해외사업 업무를 추진하면서 해외사업 목표 및 추진 현황, 해외사업 사업목표 취소 및 사업비용 지출, 해외사업 미수수료 관리, 국내 통역사 선정, 해외사업 리스크관리위원회 운영 등 해외사업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운영이 필요함.

나. 지적행정 및 고객센터 서비스 분야

17- 4 기술검사 및 업무지도에 관한 사항

< 요약 >

「지적업무처리규정」 제27조, 「업무규정」 제28조

최근 지적측량수행자 지도·감독의 필요성을 지적한 언론의 보도 및 국회의원 관심 증가로 한국국토정보공사로 감독권한이 위임된 업무에 대하여 시·도에 감독권이 부활되어야 한다는 언론보도로 인해 2015년 ▲▲▲▲부로부터 경계복원측량 및 지적현황측량에 대한 “2015년 지적측량 업무점검 계획”을 통보 받는 등 위임 받아 실시하고 있는 기술검사의 실효성이 문제가 대두 되고 있음.

지적공부정리 불요분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에 대한 기술검사 및 업무지도 현황을 살펴본 결과 전체 업무완료 건수 220,000건~246,000건 대비 지적건수가 11건~117건(0.01%~0.05%)으로 실질적인 기술검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위임 받아 실시하고 있는 공부정리 불요분에 대한 기술검사에 대한 전담인력을 통해 실효성 있는 기술검사로 지적측량 성과의 정확성과 국민으로부터 지적측량 서비스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여야 함.

17- 5 CS아카데미 운영 및 CS교육에 관한 사항

< 요약 >

CS교육체계 개선 계획(0000팀-2493: 2009. 9. 30.), 「사내강사운영지침」 제3조~제9조

1. CS아카데미 운영 소홀

공사의 역할, 기능 확대에 따른 2015년 국토정보교육원 교육방향이 공사표준역량 모델에 기반한 직급별 기본교육과정으로 개편되어 국가공간정보 허브기관으로서의 위상확립을 위한 공간정보과정 확대 및 사회트렌드 및 교육수요를 반영한 직무전문 교육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어, 맞춤형 CS교육이 CS아카데미에서 하지 못하는 등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

2. CS교육 운영 미흡

공사의 서비스 영역 확대로 고객중심의 CS교육을 통한 고객만족도 지속적 우수등급 유지와 지속가능한 서비스체계를 유지하고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7명이던 CS강사가 현재 5명으로 축소 운영되고 있고 CS와 관련된 교육과정을 개발, 지도, 운영 관리할 수 있는 강사로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스킬 등이 있는 Master Coach가 없는 상태임.

다. 자산관리 및 전산운영 분야

17- 7 정보시스템 장애이력관리에 관한 사항

< 요약 >

「정보자원운영규칙」 제27조, 제37조

주요 정보시스템 장애 이력 관리 현황을 살펴보면 결과 수기 일지로 작성되어 장비별 또는 주요 시스템별 장애 이력을 분석하기 어려우며,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업체로부터 매월 보고받는 지원보고서의 장애조치 내용이 “정보센터 운영일지의 장애사항”과 별도로 관리되고 있음.

또한 주요 시스템 장애 발생 현황을 보면 주기적 현황 파악 및 동일 장애 발생에 대한 분석 등을 통한 정보시스템의 장애관리 및 문제관리 활동이 적절히 이루어진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17-11**승강기 유지관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요약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6조, 제17조,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 승강기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0호: 2014. 7. 1.)

1. 승강기 자체점검 및 관리 소홀

2014년도의 경우 총 11회 중 5회, 2015년도의 경우 총 11회 중 2회에 걸쳐 7개월의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며 자체점검 일지에 결재를 누락하였음.

또한 매월 1회 원격점검을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4. 2. 1.부터 현재까지 총 22회 중 1회(2015년 9월분)만 실시하는 등 승강기 운행의 안전에 관한 자체점검 및 원격점검을 소홀히 하였고, 자체점검 실시내용 등이 기재된 유지관리 담당자 및 자체점검 실시내용 등이 기재된 승강기 관리카드를 기록·관리하지 아니하는 등 승강기 자체점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소홀히 하였음.

2. 승강기 사고의 보고 및 고장·수리일지 작성 소홀

2014. 2. 1.부터 현재까지 총 8회 중 5회(2014. 2. 3. 외 4)의 중대한 사고 및 고장에 대하여 관리원의 장에게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승강기 고장·수리일지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등 승강기 사고의 보고 및 고장·수리일지 작성에 관한 사항을 소홀히 하였음.

라. 회계사무 및 계약사무 분야**17- 6****SLA(서비스 수준 관리) 종합평가에 관한 사항****< 요약 >**

「정보자원운영규칙」 제40조, 제43조,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SLA 운영계획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SLA 운영계획」에 따르면 종합평가방법은 월평균점수에서 누적 감점을 차감하도록 되어 있어 이미 월평가에서 반영된 감점을 종합평가에서 이중으로 감점 적용하고 있다. 또한 2014년에 실시한 「정보자산 통합유지관리」 종합평가는 담당자가 월별로 평가한 내용을 내부 직원 6인 같은 방법으로 평가하였으며, 평가결과는 동일한 결과가 나와 종합평가의 실효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됨.

또한 정보시스템 이용자의 체감수준^{정보시스템 만족지수} 및 위탁관리기관의 상주인력 등에 대한 복지만족도 등을 고려하여 SLA 종합평가 지표를 신설하는 방안 마련

17-16 교육훈련여비 규정에 관한 사항

< 요약 >

「여비규정」 제6조, 제13조

교육훈련여비 지급에 관한 규정에는 위와 같이 근무지내와 근무지외, 합숙과 비합숙에 따른 여비 적용에 대한 규정만 있고 증빙서류, 여비의 결제 및 정산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갖추어 있지 않음.

마. 인사행정 분야

17-15 계약제 직원 경력인정에 관한 사항

< 요약 >

「계약제직원관리지침」 제14조

4급 이하 계약직의 경우 채용조건 및 직급과 관계없이 경력증명서로 인정되는 모든 경력을 호봉으로 환산하여 연봉 계산을 산정함으로써 국토정보직 평균근속연수를 1~14호봉을 상회하고 있다. 따라 직급별 최저호봉만 규정되어 있고 상한선이 없어 직급별 최고호봉까지 연봉산정이 가능하여, 낮은 직급의 고액연봉자를 초래하고 있음.

또한 계약제 직원의 채용조건(해당분야 경력 5년, 10년 이상 등) 및 채용직급에 부합하는 호봉으로 경력 상한기준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17-17 육아휴직 기간 중 승급에 관한 사항

< 요약 >

「인사규정」 제20조, 제21조, 「급여규정」 제19조, 「공무원 보수규정」 제14조, 제15조

공사는 규정상으로 인사규정 제20조(승진임용의 제한) 제1항 제1호 및 제21조(승진소요 최저연수) 제3항에 따라 휴직(육아휴직 포함) 중인 자는 승진 임용할 수 없지만,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1년에 한하여 재직기간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급여규정」 제19조(승급의 제한) 제2항 제1호에는 승진임용 제한기간을 승급 제한하고 있어 「인사규정」과 「급여규정」이 서로 상충되고 있음.

「급여규정」 제19조(승급의 제한) 제2항에 따라 휴직 중에 있는 자는 승급할 수 없음에도 「인사규정」 제21조(승진소요 최저연수) 제3항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1년에 한하여 재직기간에 산입한다는 규정”에 근거하여 육아휴직 기간에 승급 발령 조치를 하고 있으므로 「공무원 보수규정」의 승급에 대한 특례 조항을 참조하여 「인사규정」과 「급여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17- 2 국토인터넷방송국 운영에 관한 사항

< 요약 >

국토인터넷방송국 구축 계획(국방부-676:2014. 3. 5.)

1. 국토인터넷방송국 구축사업에 대한 검사(검수인수) 소홀

사업 완료 시 「계약규정」제12조(검사) 제①항에 따라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따라서 검사를 하여야 함에도 일부 내용이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내용과 다른 결과를 초래하였음.

2. 국토인터넷방송국 운영(관리)방안 소홀

국토인터넷방송국 확대를 위해서는 전반적인 운영환경 분석과 필요역량 확보를 위한 다양한 ①전략 수립 등이 필요하며, 일정기간 동안에는 ②외부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당초 목표로 하는 수준의 방송품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운영체계를 구축함은 물론 ③정기적인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와 방송국 운영 안정화와 콘텐츠 개발 등을 고려한 ④통합적인 유지보수 정책을 통해 운영계획(사업)을 지속적으로 발전 및 확대시키는 노력이 필요함.

또한 국토인터넷방송국의 안정적인 운영과 체계적인 방송을 위해서는 내부 운영규정을 마련해 표준화된 업무프로세스를 정립하고 청취자의 요구를 반영한 고품질의 방송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⑤방송 업무절차 및 사후관리 등이 정의된 “(가칭) 국토인터넷방송국 운영지침”을 통해 방송업무 수준을 높이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타당함.

17- 3 「홍보물 관리지침」 운영에 관한 사항

< 요약 >

「홍보물 관리지침」 제4조, 제5조, 제8조

1. 홍보물 제작에 따른 관리부서 사전검토 절차 소홀

일선 본사 및 본부에서 필요에 따라 홍보물을 제작해 활용하고 있으나 홍보물을 총괄 관리하는 ▲▲처에서는 제작현황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더불어 홍보물의 가치를 평가해 전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홍보물의 경우 타 본부 등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함에도 관리가 소홀이 이루어지고 있음.

2. 홍보물 제작방법 표준화 미흡

「홍보물 관리지침」에는 “제작기획안”에 대한 표준화된 서식이 없어 담당자의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 작성되어지고 있고 사전검토 방법이 서로 상이함으로써 반드시 사전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누락될 우려가 있는 등 사업추진단계에서 이루어져야하는 검토절차가 미흡함.

사. 일반행정 및 복무 분야

17- 9 사택입주자 자격심사 불합리에 관한 사항

< 요약 >

▲▲▲▲부 「지방이전 공공기관 임시사택 및 숙소기준 통보」(2013. 11. 11.), 「사택운영규칙」 제6조

1. 사택 운영 소홀

▲▲▲▲부의 운영기준이 특별공급 당첨 후 계약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택 입주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고 임시사택 입주자에 독신자를 제외하고 정하고 있음에도 ‘주소지에서 사무실까지 출퇴근이 불가능한 임직원’을 입주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사택운영규칙」과 특별공급 분양 수혜자를 입주대상에서 제외하고 보조인력에게 사택 입주 우선권 부여 하도록 정하고 있는 내부방침문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여 입주제한 사유가 있음에도 사택에 입주한 자가 존재함.

2. 입주자격 심사절차 미흡

「사택운영지침」의 각서에 특별공급 당첨 여부 및 계약여부와 관련된 조항이 없어 특별공급과 관련된 입주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17-10 사이클선수단 운영 및 관리 소홀

< 요약 >

「사이클선수단 운영지침」 제8조, 제9조, 제16조, 「복무규정」 제6조, 「초과근무산정기준」

1. 사이클선수단 훈련일지 작성 소홀

연간 훈련계획은 작성하여 제출하고 있으나, 월간 훈련계획은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았고, 소속 선수에 대한 훈련일지도 작성하여 비치하지 않고 있음.

2. 사이클선수단 초과근무 근태관리 소홀

사이클 선수들에 대한 출퇴근기록이 없고, 특근명령부는 1인이 일괄 수기 작성하고 있으며, 초과근무 승인권자의 결재 없이 초과근무 수당이 지급되고 있음.

또한 외부훈련 기간에 사전 내부방침과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는데도 기존 특근명령부에 초과근무를 승인하고 있으며, 국외출장자는 초과근무 인정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는데도 초과근무 시간을 적용하고 있음.

17-12 유연근무자 근태관리에 관한 사항

< 요약 >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제2조, 유연근무자 근태관리 철저 협조 요청,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2014년 10월부터 본사 유연근무자 출퇴근현황을 조사한 결과, 분기별로 3회 이상 근태리더기 미체크 위반한 직원에 대하여 유연근무 강제해지 및 승인제한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음.

또한 ○○지역본부 유연근무자 근태기록을 조사한 결과 위반사례가 발생하였다. 위반사례 중 근태리더기와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이하 ERP라 한다.) 연동오류 등으로 근태기록이 누락되거나 잘못 기록된 경우에는 ERP에서 출퇴근기록 정정을 신청하여야 하고, 휴가와 출장 중복으로 근무상황카드의 근태현황이 잘못 기록된 때에는 복무담당부서에 근태현황 정정신청을 하여야함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음.

17-13 일상감사 의뢰 소홀

< 요약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감사기준시행세칙」 제48조

2015년도 기관장 경영성과협약 이행실적평가 관리계획(안) 등 10건에 대하여 일상감사 대상 업무 임에도 불구하고 일상감사 의뢰를 하지 않는 등 업무처리를 소홀히 하였음.

17-14 중요기록물 전산화 DB구축 용역에 관한 사항(적극행정 면책)

< 요약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기록물 관리요령」

1. 중요기록물 전산화 DB구축 세부사항 확인

검수조서 제출 시 전체 준공 자료에 대한 목록이 실물로는 확인되지만 검사 조서에 검사 세부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준공 절차상 문제가 있으니 중요기록물 전산화 DB 구축 2차사업 인수 시에는 세밀하게 검사하여 시정하고 보완하여야 함.

2. 중요기록물 전산화 DB구축 사업 보안관리 및 준수

공사의 중요기록을 다루는 현장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및 공사의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소홀히 하였음.

4. 적극행정에 따른 면책(「감사기준시행세칙」 제76조(적극행정 면책 등))

- 지적건명: 중요기록물 전산화 DB구축 용역에 관한 사항
- 대상기관: 한국국토정보공사 본사 ▼▼▼▼실
- 지적요지
 - 중요기록물 전산화 DB구축 준공시 검사조서에 검사 세부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준공 절차상 문제 있는 등 업무처리를 소홀히 함.
 - 공사의 중요기록을 다루는 현장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및 공사의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소홀히 하였음.

○ 면책사유

- 공사의 이익 및 적극적인 업무자세로 임하여 업무개선, 공사홍보, 외부 표창 등 공사 기록관리 역량 강화와 우수사례를 전파하여 기록물 관리의 경쟁력에 기틀을 마련한 점을 감안하여 적극면책 요건인 공익성, 타당성, 투명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용하고자 한다. 다만, 전자적 관리기반 구축을 위한 기록물의 체계적인 정리에 대한 요구와 신속한 검색 및 활용을 위하여 기록관리시스템(RMS) 통합서비스 도입이 시급하며 이에 따른 중요기록물에 대한 보존성 향상효과가 크다고 판단 됨.

IV.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요구

1. 행정상·재정상·신분상 처분요구사항 일람표

(단위 : 건, 명, 원)

처분지시 일련번호	감사대상기관 (관계기관/부서)	건 명	처분요구			조치기한	감사자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17- 1	△△△△실	전사 위기관리 운영 소홀	통보			1개월	
17- 2	▲▲처	국토인터넷방송국 운영에 관한 사항	개선요구			2개월	
17- 3	▲▲처	「홍보물 관리지침」 운영에 관한 사항	개선요구			2개월	
17- 4	□□□□실	기술검사 및 업무지도에 관한 사항	권고요구			2개월	
17- 5	■ ■ ■ ■ 처	CS아카데미 운영 및 CS교육에 관한 사항	통보			1개월	
17- 6	▽▽▽▽▽처	SLA(서비스 수준 관리) 종합평가에 관한 사항	통보			1개월	
17- 7	▽▽▽▽▽처	정보시스템 장애이력관리에 관한 사항	권고요구			2개월	
17- 8	◆◆◆◆◆처	해외사업추진(목표, 관리 등)에 관한 사항	개선요구			2개월	
17- 9	▼▼▼▼실	사택입주자 자격심사 불합리에 관한 사항	권고요구			2개월	
17-10	▼▼▼▼실	사이클선수단 운영 및 관리 소홀	통보			1개월	
17-11	▼▼▼▼실	승강기 유지관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통보			1개월	
17-12	▼▼▼▼실	유연근무자 근태관리에 관한 사항	개선요구			2개월	
17-13	▼▼▼▼실	일상감사 의뢰 소홀	통보			1개월	
17-14	▼▼▼▼실	중요기록물 전산화 DB구축 용역에 관한 사항	통보 적극행정면책			1개월	
17-15	○○처	계약제 직원 경력인정에 관한 사항	개선요구			2개월	
17-16	○○처	교육훈련여비 규정에 관한 사항	개선요구			2개월	
17-17	○○처	육아휴직 기간 중 승급에 관한 사항	권고요구			2개월	

※ 처분요구: 17건<개선 6건, 권고 4건, 통보 7건>

1-1. 신분상 조치인원 명세

제목	처분내역				
	조치양정	소속	직급	성명	관련지적사항
-	-	-	-	-	-

2. 현지조치사항 일람표

(단위: 건, 원)					
일련번호	감사대상기관 (관계기관/부서)	제 목	조치사항	금액	감사자
1- 1	●●●●●●	위원회 관리 미흡	현지통보		
2-2	▲▲처	홍보물(용역 성과물 등 포함) 통합관리 체계 마련	현지통보		

V. 기타사항

1. 향후 처리계획 및 특기사항

○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에 처분 요구하고, 사후 이행 관리 점검 실시

붙임 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17부.

2. 모범사례 12부. 끝.

한국국토정보공사 상임감사

통 보

제 목 전사 위기관리 운영 소홀

관 계 기 관 한국국토정보공사 본사 △△△△실

내 용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서는 공사경영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위기를 사전예방 및 최소화하기 위하여 「위기관리규정」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경영, 재난, 홍보, 갈등분야 세부항목별 「위기관리매뉴얼」을 작성하여 전사적 위기를 관리하고 있다. 위기관리는 신속한 대응체계가 최우선되어야 함으로 행정처리는 신속하고, 간편하고, 현실적이어야 한다.

1. 평상시 위험관리

「위기관리규정」 제15조(평상시 위험관리)에 따라 주관부서는 위험의 식별, 평가, 대응, 모니터링 및 보고 등의 위험관리 활동을 수행하며, 총괄부서는 주관부서의 모니터링결과 대응상태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추가적인 대응 및 개선을 요구하여야 한다. 모니터링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총괄부서(△△△△실)에서는 위기관리매뉴얼을 시행¹⁾하며 주관부서의 모니터링 결과를 매월 5일까지 보고하도록 하였다.

1) 공사위기관리매뉴얼 제정시행(△△△△실-5580: 2013.08.29.), 위기관리매뉴얼 개정시행(△△△△실-9748: 2014.12.30.)

[표1] 평상시 위험관리 근거 및 현황

평가 시 위험관리 (모니터링)	운영현황		비고
	근거	위기관리 규정 제15조(평상시 위험관리) 주관부서: 위험 모니터링 및 보고 등 위기관리활동 수행 총괄부서: 모니터링결과에 대해 추가적인 대응 및 개선요구	보고소홀
	현황	매월보고: 14년도 2개부서(●●●●●●●●, ○●○●○●○●처) 15년도 1개부서(○●○●○●○●처) 수시보고: 2년간 2개부서(정부운영처, ㉡㉡㉡㉡㉡처)	통제소홀

[표2] 전사적 위기관리 모니터링 보고현황

실처	13년		14년도												15년도										비고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실																									
●●●●●●●●																									
▲▲처																									
□□□□실																									
○●○●○●○●처																									
■●■●■●■●처																									
○○○○○○○실																									
▽▽▽▽▽처																									
◆◆◆◆◆처																									
▼▼▼▼실																									
○○처																									
○●○처																									
㉡㉡㉡㉡㉡처																									
연구원																									

※ 전자결재 보고문서 참조 구성

■ 심각(위기단계) ■ 경계(위기단계)

그런데도 위 공사에서는 [표2]의 보고현황에서 확인하는 바와 같이 주관부서인 실·처의 모니터링에 대한 결과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총괄부서의 평상시 위험관리가 부족하였다.

2. 위기 보고체계 개선노력

2014년 9월 주관부서에서 위기관리 개선의견²⁾으로 매월 실시하는 “문서보

고를 메모보고 또는 위기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항목별 담당자가 등록하도록 보고체계 간편화 방안”을 건의·접수하였고, 보고체계 간편화방안은 보고의 신속성과 편리성 등 효율성을 고려하여 위기관리신호등제로 2014년 11월경 위랜드 고도화 작업 시 초기화면에 구축하였다.

[표3] 매뉴얼 및 위기관리신호등제 구축현황

		운영현황	비고
매뉴얼 제정·개선		2013 제정, 2014 개선(2014.12.30.) ※ 현재 조직변경 사항 및 담당자 변경 미적용	적용 필요
		운영현황	비고
위기관리 신호등제	개선 요구	위기관리 보고체계 개선 요구(○○○○○부-3137(2014.09.02.) ※ 메모보고 또는 시스템구축 후 항목별 담당자가 등록하도록 변경요구	보고체계 변화없음 시스템 미작동
	시스템 구축	위기관리신호등 체계로 개선 위랜드 고도화작업 시 병행처리(2014.7.18.~12.17)	
	관리자	신호등 변경자: 총괄부서(△△△△실) 위기관리 담당자	
	방법	위기항목별 모니터링 상황을 해당 위험신호로 표시	
	운영	운영부서 모니터링 결과를 총괄부서에 보고 후 총괄부서 관리자가 위기단계별 신호등 변경	

그런데도 위 공사에서는 별다른 장애요인 없이 2015년 종합감사일 현재까지 정상운영 되지 않고 있으며, 또한 현재의 위기관리매뉴얼은 조직개편과 인사이동으로 인해 변경된 조직 및 담당자로 현실화 되지 않았다.

3. 전사위기 대처현황과의 연계성

공사는 공사경영에 결정적인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불안정한 위기를 사전예방 및 최소화하기 위하여 위기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위기상황을 관리하고 있다. 또한 “정부정책 변화에 따른 전략방향, 업무범위변경 등”을 경영위험 유형으로 특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2) 위기관리매뉴얼 개정의견 제출(○○○○○부-3137: 2014.09.02.)

[표4] 전사적 위기대처현황

	운영현황		비고
전사위기 대처현황	위험 유형	경영전략위험_정부정책 변화에 따른 전략방향, 업무범위변경 등 ※ 위기관리규정 [별표1] (제7조제2항 관련)	위기상황과 위기관리의 연계 부족
	대처현황	14년 제1회 위기관리 대책회의(2014.01.21.) LX비상대책위원회 운영(2014.01.14.)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에 대응, 방만경영 정상화 등 LX경영혁신추진단 운영(2015.10.27.) 공공기관 기능조정 및 환경변화에 대응한 공사 미래조직체계 등	
	규정 연계성	위기대처현황과 위기관리규정(매뉴얼)과의 연결고리 미흡	

그런데도 위 공사에서는 실무에 있어서는 [표4]의 운영현황과 같이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에 대응하기 위한 2014년 「LX비상대책단」 운영과 2015년 공공기관 기능조정 등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LX경영혁신추진단」 등은 경영 전략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전사적 위기대처기구임에도 위기관리체계와의 연계성이 부족하다.

4. 위기관리 교육현황

공사에 전사적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 위기상황별 신속한 대응체계가 효율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위기관리규정」 제23조에 임직원에 대한 위기관리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표5] 위기관리 교육 현황 및 성과감사 사후조치

	운영현황		비고
위기관리 교육	근거	임직원을 대상으로 위기관리 교육을 실시해야한다 2012.12.31. 시행 _ 위기관리규정 제23조(임직원교육)	실행필요
	실적	3개년(2013년~2015년) 교육실적 없음	
성과감사 (2013.11)	개선요구	구체적인 실행(점검)계획 수립, 매뉴얼 개선	
	조치사항	매뉴얼 개선, 운영계획(안) 작성(문서 미등록)	

그런데도 위 공사에서는 [표5]와 같이 위기관리규정이 제정된 2012년 12월부터 2015년 11월 종합감사일 현재까지 3년여의 기간 동안 위기관리교육이 실시

되지 않아 임직원에 대한 위기관리능력 제고노력이 부족하였다.

결론적으로 ① 위기관리규정 제15조에 따른 위험모니터링, 보고 등의 평상시 위함관리활동이 부족하였고, ② 신속한 보고체계를 위하여 구축된 위기관리 신호등제가 정상 운영되지 않았으며 ③ 공공기관 기능조정 등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실제 전사위기대처와 위기관리체계와의 연계성이 부족하였다. 그리고 ④ 「위기관리규정」 도입 후 3년여의 기간 동안 임직원에 대한 위기관리교육이 실시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실장)은 전사적 위기관리체계가 효과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위기관리신호제를 포함한 위험모니터링, 보고 등 평상시 위함관리프로세스를 효율적으로 개선하여 운영하시기 바라며, 임직원에 대한 위기관리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사 위기관리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상임감사

개선요구

제 목 국토인터넷방송국 운영에 관한 사항

관 계 기 관 한국국토정보공사 본사 ▲▲처

내 용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서는 국토 공간정보 관련 소식을 신속하게 제공하고 이슈를 선정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최고의 국토정보 전문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 국토인터넷방송국을 2015. 6. 7. 개국하여 운영하고 있다.

1. 국토인터넷방송국 구축사업에 대한 검사(검수인수) 소홀

< 국토인터넷방송국 구축 현황 >

- ☐ 구축기간: 2014. 5. 28. ~ 9. 24.
- ☐ 구축금액: 209,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 구축업체: (주)×××
- ☐ 사업범위
 - 스튜디오 방송시스템(스튜디오 인테리어 시공 포함)
 - 인터넷방송시스템(홈페이지 등 포함), 특수조명시스템, 방송지원 및 교육 등

국토인터넷방송국은 2014. 3. 5. “국토인터넷방송국 구축 계획(안)”(국토부-676)에 따라 2014. 5. 28.자 (주)○○○과 계약되어 2014. 9. 24.까지 4개월간의 사업기간을 두고 구축하였으며, 2014. 9. 23.자 (주)×××으로부터 검수 요청되어 2014. 10. 6.자로 ▲▲처에서 검수 및 인수를 실시하였다.

※ 검수는 제안요청서를 기준으로 실시하였음.(검사조서 참조)

[표 1] 국토인터넷방송국 구축 사업(일부)의 과업지시 미 이행 현황

구분	구축 결과에 대한 검토사항		적요
	과업 요구사항	현재 점검 결과	
홈페이지 다국어 지원	한국어/영어 지원	한국어만 지원	성능 보안
콘텐츠관리시스템(CMS)	선택적 방송 시청 (고화질/저화질 등)	단일 화질 제공	성능 보안
시스템 취약점 점검	자체 점검 실시 (점검보고서 제출)	취약점 미발견	검사 시 점검보고서 없음
개인정보 보안적용	암호화 조치	개인정보 미수집	암호화 조치 불필요
메뉴구성 (PC버전/모바일버전 전환 선택)	전환 가능	전환 불가능	성능 보안

※ 현재 구축된 국토인터넷방송국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에서 과업 일부 추출

그러나 위 공사에서는 [표 1]과 같이 “국토인터넷방송국 구축 사업” 제안요청서의 일부 요구사항이 시스템에 미 반영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사업 수행 계획서의 수행 범위별 주요 내용을 기반으로 “요구사항 추적표”를 작성하고 프로젝트 진행 상태를 관리하여야 함에도 그러지 못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 보안적용 과업은 국토인터넷방송국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를 취득 및 보관하지 않아 암호화가 필요 없음에도 과업지시가 되어 있는 등 요구사항이 부적절하게 이루어져 있다. 물론 사업 중간에 변경사항이 생기는 경우 당연히 요구사항을 변경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나 금번 사업의 경우 요구사항 변경을 위한 합의 또는 변경 승인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전자결재에서 요구사항 변경 요청 및 승인(협의) 문서를 확인할 수 없음

결과적으로 사업 완료 시 「계약규정」 제12조(검사)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따라서 검사를 하여야 함에도 일부 내용이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내용과 다른 결과를 초래

하였다.

2. 국토인터넷방송국 운영(관리)방안 소홀

공사에서는 2014년 3월 국토인터넷방송국 구축 계획(안)(▲▲처-676, 2014. 3. 5.)에 국토인터넷방송국을 운영하고 운영성과를 검토 후 단계별(1단계(정착): 최소규모 / 2단계(안정): 콘텐츠 확대 / 3단계(확대): 케이블 TV 등과 연계)로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운영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15년 국토인터넷방송국 운영 계획(▲▲처-492, 2015. 3. 2.)에서도 2015년 하반기에 단계별(1단계(정착): 홈페이지 등 / 2단계(안정): 콘텐츠 확대 / 3단계(확대): 케이블방송 등과 연계)로 사업을 확대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 연도별 국토인터넷방송국 운영 방침 >	
2014년도	2015년도
□ 구축 초기 비정기 송출(홈페이지, SNS 등을 통한 송출) □ 운영성과 검토 후 단계별 확대 - 1단계(정착): 최소규모(홈페이지, SNS 등) - 2단계(안정): 콘텐츠 확대(연구자료, 지적연수원 교육 콘텐츠 송출) - 3단계(확대): 케이블 TV 등과 연계(정부정책, 교육 콘텐츠, 국외 공간정보 전문 학술 콘텐츠 등의 정기 송출) □ 공사 소식의 최소화(Shadow 마케팅 기법) □ 홍보관과 연계 운영(오픈 스튜디오, 홍보관 방문 시 방송 체험 등) □ 각종회의 및 자문, 벤치마킹 등을 통한 콘텐츠 기획 운영	□ 비정기 송출(홈페이지, SNS, 모바일, 네이버 TV 캐스트 등) □ 단계별 확대방안 검토(2015년 하반기) - 1단계(정착): 홈페이지, SNS, 모바일, 네이버 TV 캐스트 - 2단계(안정): 콘텐츠 확대(연구자료, 교육자료 송출 등) - 3단계(확대): 케이블 TV 등과 연계(정책, 학술콘텐츠 등 정기 송출) □ 공사 소식의 최소화(Shadow 마케팅 기법) □ UX홍보관과 연계 운영을 통해 시너지 창출 □ 각종 교육자료 및 마케팅 자료 생산 및 송출

그러나 위 공사에서 2014년도 구축계획에 수립된 바와 같이 일정기간의 국토인터넷방송국 운영성과를 분석하고 그 분석결과를 반영하여 향후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나 2014년도 운영결과를 분석한 보고서는 확인할 수 없으며 2014년과 2015년도 운영계획이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 있어 다양한 공간정보 관련 소식을 신속하게 제공하고 이슈를 선점 방송하기 위한 전사적인 추진전략 수립이 미흡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더불어 국토인터넷방송국 운영 확대를 위해서는 방송국 운영을 위해서는 필요역량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하나 단순히 인력충원과 장비 구입 등과 같은 인프라 확대만을 고려하고 있는 실정으로 보여지고 있어 전반적인 운영분석 등을 사전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위험요소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토인터넷방송국 운영 확대 과정에서 필요한 다양한 전문지식(콘텐츠 개발 등)과 운영(방송 송출 등)기술을 보완하기 위해 외부 전문인력 등을 활용해 추진하는 아웃소싱 전략을 병행하는 정책을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

[표 2] 인터넷방송국 콘텐츠 공시 현황

구분		공시 일시(횟수)	자료 건수
메인 메뉴	세부 메뉴		
정책마당	정책	2015.05.04.~10.12.(3회)	8건
	인터뷰.대담.토론	2015.04.29.~07.24.(2회)	2건
	행사.취재.홍보	2015.07.08.~09.22.(3회)	3건
산업마당	업계동향	2015.05.01.~10.08.(7회)	10건
	신기술.장비	2015.04.20.~07.24.(13회)	88건
	공유자료	2015.08.18.~10.12.(2회)	26건
	홍보콘텐츠	2015.07.24.~11.03.(7회)	12건
연구·교육마당	연구콘텐츠	2015.05.13.~10.13.(5회)	13건
	교육콘텐츠	2015.05.13.~08.19.(3회)	6건
	공간정보아카데미	-	0건
	국내외 대학 오픈강의	2015.05.08.~06.15.(7회)	60건
	TED	2015.04.30.~07.24.(3회)	60건
고객마당	아름다운국토	2015.04.30.~06.15.(5회)	35건
	국민안전	2015.04.30.~06.09.(4회)	29건
	채용정보	2015.05.08.~10.01.(8회)	36건
	부동산정보	2015.05.04.~09.24.(8회)	76건
	동영상	2015.05.04.~10.27.(6회)	11건

한편 국토인터넷방송국 홈페이지에 공시되어 있는 방송자료 위 [표 2] 등을 확인하여 본바 실질적인 방송은 2015. 4. 20.부터 자료를 공시하고 방송을 송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초기 정착을 위한 임시 운영 기간이 짧고 공시된 콘텐츠

츠의 내용이 일부 메뉴에 집중되어 있는 등 운영 노하우 습득과 콘텐츠의 다양성을 확보하기에는 운영기간이 부족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따라서 2015. 9. 24. 무상 유지보수 기간이 종료되어 향후 유상 유지보수를 실시해야 함으로 유지보수 계약 시 기반 시설(방송시스템 등) 유지보수는 물론 안정적인 운영과 고품질의 방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 기술 이전 및 방송 콘텐츠 개발을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지원될 수 있도록 통합적인 유지보수 방향을 다각도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

결과적으로 위 공사에서는 국토인터넷방송국 확대를 위해서는 전반적인 운영 환경 분석과 필요역량 확보를 위한 다양한 ①전략 수립 등이 필요하며, 일정기간 동안에는 ②외부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당초 목표로 하는 수준의 방송품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운영체계를 구축함은 물론 ③정기적인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와 방송국 운영 안정화와 콘텐츠 개발 등을 고려한 ④통합적인 유지보수 정책을 통해 운영계획(사업)을 지속적으로 발전 및 확대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국토인터넷방송국의 안정적인 운영과 체계적인 방송을 위해서는 내부 운영규정을 마련해 표준화된 업무프로세스를 정립하고 청취자의 요구를 반영한 고품질의 방송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⑤방송 업무절차 및 사후관리 등이 정의된 “(가칭) 국토인터넷방송국 운영 매뉴얼”을 통해 방송업무 수준을 높이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

조치할 사항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처장)**은 국토인터넷방송국 운영 확대를 위해 기존 운영성과를 평가하는 한편 안정적인 운영과 콘텐츠 확대를 지

원할 수 있는 통합 유지보수 계획 등이 포함된 ‘국토인터넷방송국 운영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라며, 더불어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방송 업무절차 및 사후관리 등이 정의된 ‘(가칭) 국토인터넷 운영 매뉴얼’을 통해 인터넷방송 수준을 높이는 체계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상임감사

개선요구

제 목 「홍보물 관리지침」 운영에 관한 사항

관 계 기 관 한국국토정보공사 본사 ▲▲처

내 용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서는 공사가 발간하는 모든 홍보물의 기획, 제작, 배포 등 홍보물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홍보물을 체계적으로 통합관리하고 고급화된 홍보물을 제작하는 것을 목적으로 「홍보물 관리지침」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1. 홍보물 제작에 따른 관리부서 사전검토 절차 소홀

「홍보물 관리지침」 제4조(홍보물의 분류)에 따르면 홍보물은 크게 인쇄홍보물과 영상홍보물로 분류되며, 인쇄홍보물은 일정한 장소 및 눈에 띄는 장소에 비치하거나 부착하여 활용하는 인쇄물로서 회사 전반적인 사항을 홍보하는 매체물로 규정하고 있고, 영상홍보물은 각종행사, 박람회, 방송매체, 온라인 매체 홍보를 위하여 제작된 영상물과 콘텐츠로서 홍보를 극대화하기 위한 매체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홍보물은 같은 지침 제5조(홍보물관리책임자) 제3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홍보물관리담당자는 홍보물에 대한 사전검토와 협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더불어 홍보물은 제6조(홍보물제작)에 따라 본사 각 부서와 지역본부, 지사는 자체적으로 업무에 필요한 홍보물을 제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 최근 3년간 홍보물(동영상, 브로슈어, 리플릿, 포스터 등) 제작 현황

구분	홍보물 제작 현황			비고
	본사	본부	지사	
2013년도	12	6		
2014년도	11	4		
2015년도	14	1		
계	37	11		

※ ERP(광고선전비, 소모품비, 지급수수료 전표)에서 홍보물 지출전표만 추출

그러나 위 공사에서는 [표]와 같이 본사 및 지역본부에서 필요에 따라 홍보물을 제작해 활용하고 있으나 홍보물을 총괄 관리하는 ▲▲처에서는 제작현황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더불어 홍보물의 가치를 평가해 전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홍보물의 경우 지역본부 등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함에도 관리가 소홀이 이루어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홍보물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처에서 홍보물제작이 필요한 경우 해당부서와 사전 협의하는 절차가 「홍보물 관리지침」에 마련되어 있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절차를 강화하는 것이 타당하다.

2. 홍보물 제작방법 표준화 미흡

「홍보물 관리지침」 제4조(홍보물의 분류)에 따르면 홍보물은 크게 인쇄홍보물과 영상홍보물로 분류되며, 인쇄홍보물은 일정한 장소 및 눈에 띄는 장소에 비치하거나 부착하여 활용하는 인쇄물로서 회사 전반적인 사항을 홍보하는 매체물로 규정하고 있고, 영상홍보물은 각종행사, 박람회, 방송매체, 온라인 매체 홍보를 위하여 제작된 영상물과 콘텐츠로서 홍보를 극대화하기 위한 매체물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 지침 제8조(홍보물제작방법) 제1항에 따르면 홍보물제작 담당자는 홍보물을 신규, 수정, 보완, 추가로 제작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기존 홍보물과 동종업계 홍보물 등을 면밀히 분석 검토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한 후 제작할 홍보물의 방향과 전개내용, 제작 사양 등을 담은 “제작기획안”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공사에서는 「홍보물 관리지침」에 “제작기획안”에 대한 표준화된 서식이 없어 담당자의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 작성되어지고 있고 사전검토 방법이 서로 상이함으로 반드시 사전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누락될 우려가 있는 등 사업추진단계에서 이루어져야하는 검토절차가 미흡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홍보물의 품질확보와 홍보성과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표준화된 작성방법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 「홍보물 관리지침」에 홍보물을 제작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홍보물의 가치를 높이고 홍보목표달성을 위해 기존 홍보물과 동종업계 홍보물 등을 면밀히 분석 검토하고 홍보물의 방향과 전개내용, 제작 사양 등을 담은 “제작기획안”이 작성될 수 있도록 표준서식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

조치할 사항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처장)은 공사에서 홍보 목적으로 제작 또는 수정되는 홍보물에 대해서는 총괄부서인 ▲▲처에서 사전 협의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시기 바라며, 홍보물 제작 시 당초 목표로 하는 홍보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제작기획안”이 되도록 「홍보물 관리지침」에 표준서식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상임감사

권고요구

제 목 기술검사 및 업무지도에 관한 사항

관 계 기 관 한국국토정보공사 본사 □□□□실

내 용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서는 지역본부별로 연 1회 이상 기술검사와 업무지도를 병행 실시하고 있다.

「지적업무처리규정」 제27조제10항에 따르면 “공사 사장은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경계복원측량 및 지적현황측량성과에 대하여 시·도본부별로 연 1회 이상 기술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 법령 등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내용을 ▲▲▲▲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업무규정」 제28조제1항, 제4항에 따르면 “사장은 지적업무처리규정 제27조제10항에 따라 지역본부별로 연 1회 이상 기술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 업무지도를 병행 할 수 있고, 사장은 지역본부장에게 기술검사 또는 업무지도를 실시하기 15일전에 실시일정을 알려야 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예고 없이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한편, 지적공부정리를 요하지 아니한 측량(경계복원측량·지적현황측량)에 대하여는 공무원의 성과검사를 거치지 않고 감독권한을 위임받아 공사(지적측량수행자가)에서 자체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지적측량 민원발생이 증가된다는 문제

점이 제기되고 있으며, 지적측량수행자 지도·감독의 필요성을 지적인 언론의 보도³⁾ 및 국회의원 관심사 증가로 “2015년 지적측량 업무점검 관련 협조요청(○○○부 ○○○○○○○과-3616: 2015. 10. 14.)”으로 공사가 수행한 경계복원측량 및 지적현황측량에 대한 업무점검 계획을 [표 1]과 같이 실시한다고 통보 받았다.

[표 1] 2015년 지적측량 업무점검 대상지역별 일정 현황

구분	기관별	지사수	지사명	점검일정
계	12개 지역본부	29개 지사		
1	◇◇지역본부	2		2015.11. 2. ~ 2015.11. 3.(2일) 2015.11. 4. ~ 2015.11. 5.(2일)
2	◆◆◆◆지역본부	2		2015.11. 9. ~ 2015.11.11.(3일) 2015.11. 3. ~ 2015.11. 5.(3일)
3	★★지역본부	1		2015.11. 2. ~ 2015.11. 4.(3일)
4	☆☆지역본부	4		2015.10.26. ~ 2015.10.28.(3일) 2015.11. 3. ~ 2015.11. 5.(3일) 2015.11.10. ~ 2015.11.12.(3일) 2015.11.17. ~ 2015.11.19.(3일)
5	◁◁지역본부	3		2015.11. 3. ~ 2015.11. 4.(2일) 2015.11. 5. ~ 2015.11. 6.(2일) 2015.11. 9. ~ 2015.11.10.(2일)
6	◀◀지역본부	2		2015.11. 9. ~ 2015.11.13.(5일) 2015.10.19. ~ 2015.10.23.(5일)
7	▷▷▷지역본부	3		2015.11. 9. ~ 2015.11.13.(5일) 2015.10.19. ~ 2015.10.22.(4일) 2015.11. 2. ~ 2015.11. 5.(4일)
8	▶▶지역본부	2		2015.11. 4. ~ 2015.11. 6.(3일) 2015.11. 9. ~ 2015.11.11.(3일)
9	♠♠전남지역본부	3		2015.11.11. ~ 2015.11.13.(3일) 2015.11.11. ~ 2015.11.13.(3일) 2015.11.16. ~ 2015.11.18.(3일)
10	♣♣♣♣지역본부	3		2015.11.16. ~ 2015.11.18.(3일) 2015.11. 9. ~ 2015.11.13.(5일) 2015.11.23. ~ 2015.11.27.(5일)
11	♣♣지역본부	3		2015.10.13. ~ 2015.10.15.(3일) 2015.11.17. ~ 2015.11.19.(3일) 2015.11.11. ~ 2015.11.13.(3일)
12	♣♣지역본부	1		2015.11. 2. ~ 2015.11. 4.(3일)

[표 2] 2012년~2015년 전체 목표대비 업무처리(경계복원, 지적현황측량) 실적 현황

3) 최근 지적측량수행자 지도·감독의 필요성을 지적인 언론의 보도 및 국회의원 관심 증가 (2015. 4. 17.자 ◇◇신문: 지적공사(현 한국국토정보공사) 시·도 감독권 부활돼야)

(단위: 천건 / 천필 / 억원)

구분	업무	목표(A)		완료(B)			경계·현황 실적(C)			비율(C:B)(%)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수량	금액
2012년	합계	1,516	4,385	370	1,822	4,402	232	507	1,781	27.8	40.5
	일반	625	2,183	307	612	2,198	205	316	1,317	51.6	59.9
	특수	891	2,202	63	1,210	2,204	27	191	464	15.8	21.1
2013년	합계	1,512	4,453	368	1,585	4,446	228	486	1,784	30.7	40.1
	일반	612	2,247	304	604	2,232	201	315	1,342	52.2	60.1
	특수	900	2,206	64	981	2,213	27	171	442	17.4	20.0
2014년	합계	1,337	4,192	396	1,437	4,340	246	494	1,917	34.4	44.2
	일반	610	2,350	332	678	2,518	218	345	1,499	50.9	59.5
	특수	727	1,842	64	759	1,822	28	149	418	19.6	22.9
2015년	합계	1,421	4,305	352	1,216	3,650	220	415	1,718	34.1	47.1
	일반	630	2,471	297	606	2,350	197	315	1,407	52.0	60.0
	특수	791	1,834	55	610	1,300	23	100	311	16.4	23.9

[표 3] 2012년~2015년 기술검사 보고 현황

구분	지사별		검사비율 (%)	실시일자	보고일자	지적건수	조치건수	재정상 금액(원)	신분상 조치(명)	비고
	지사	기술검사								
2012년	185	34	18.4	2012. 6.18.	2012.12. 7.	71	71	0	0	□□□□실 수행
2013년	186	61	32.8	2013. 1. 1.	2013.12.30.	46	34	0	0	□□□□실/감사실 협업 수행
2014년	186	12	6.5	2014. 1. 1.	2015. 2.24.	18	18	0	0	
2015년	179	-	-	-	-	-	-	-	-	-

[표 4] 2012년~2015년 업무지도 실시 현황

구분	지사별		업무비율(%)	본사 실시여부	지적건수	조치건수	재정상 금액(원)	신분상 조치(명)
	지사	업무지도						
2012년	185	-	-	X	-	-	-	-
2013년	186	11	5.9	○	-	-	0	0
2014년	186	41	22.0	○	117	117	0	0
2015년	179	-	-	X	-	-	-	-

[표 5] 2012년~2015년 업무완료 대비 기술검사 및 업무지도 지적건수 현황

(단위: 건 / 필 / 억원)

구분	지사	기술검사		업무지도		경계·현황 완료건수(C)	비율(%)	
		실시 지사	지적 건수(A)	실시 지사	지적 건수(B)		A:C	B:C
2012년	185	34	71	-	-	232,000	0.03	-
2013년	186	61	46	11	-	228,000	0.02	-
2014년	186	12	18	41	117	246,000	0.01	0.05
2015년	179	-	-	-	-	220,000	-	-

공사는 2012년부터 2015년 현재까지 [표 2]와 같이 지적공부정리 불요분인
경계복원 및 지적현황측량을 수행하고 있으며, 수행한 업무에 대하여는 ▲▲▲

▲부로부터 감독권한을 위임받아 [표 3]~[표 4]와 같이 자체 검사 및 업무지도
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지적측량수행자 지도·감독의 필요성을 지적한 언론의 보도 및
국회의원 관심 증가로 한국국토정보공사로 감독권한이 위임된 업무에 대하여
시·도에게 감독권이 부활되어야 한다는 언론보도로 인해 2015년 ▲▲▲▲부
부터 경계복원측량 및 지적현황측량에 대한 “2015년 지적측량 업무점검 계획”을
[표 1]과 같이 통보 받는 등 위임 받아 실시하고 있는 기술검사의 실효성이 문
제가 대두 되고 있다.

또한 위 공사에서는 [표 5]와 같이 지적공부정리 불요분 경계복원측량, 지적
현황측량에 대한 기술검사 및 업무지도 현황을 살펴본 결과 전체 업무완료 건수
220,000건~246,000건 대비 지적건수가 11건~117건(0.01%~0.05%)으로 실질적
인 기술검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위임 받아 실시하고 있는 공부
정리 불요분에 대한 기술검사 전담인력을 통해 실효성 있는 기술검사로 지적측
량 성과의 정확성과 국민으로부터 지적측량 서비스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그 결과 기술검사 및 업무지도의 실효성 확보와 지적측량 서비스에 대한 신
뢰성 제고를 위해 기술검사 전담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조치할 사항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실장)**은 기술검사 및 업무
지도의 실효성 확보와 지적측량 서비스 대한 신뢰성 제고를 위해 기술검사 전담
인력을 확보하고, 지적측량 성과의 정확성과 국민으로부터 지적측량 서비스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상임감사

통 보

제 목 CS아카데미 운영 및 CS교육에 관한 사항

관 계 기 관 한국국토정보공사 본사 ■■■■처

내 용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서는 외부 전문기관에 의존하는 CS 교육을 내부역량을 강화하여 공사 주관 하에 맞춤형 CS교육을 CS아카데미를 통해 실시하고 있다.

공사는 CS교육 체계 개선 계획(××××팀-2493: 2009. 9. 30.)에 따르면 2009년 4월 29일 사장 지시사항으로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수립 CS교육 부문”에 따라 교육예산 절감 및 교육효과 극대화를 위해 교육주체 변경을 통하여 CS전문기관 위탁교육에서 국토정보교육원 CS아카데미를 개원하여 2010년부터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공사 「사내강사 운영지침」 제3조~제9조에 따르면 Customer Service 사내강사(이하 ‘CS강사’라 한다)란 공사의 서비스 품질향상, 창의적 문제해결, CS 문화형성을 위한 CS관련 전문교육과정을 개발(지원), 지도, 운영관리 등을 할 수 있는 자를 지칭하며, Master Coach와 Senior Coach로 구분하고 있다. “Master Coach”는 CS와 관련된 교육과정을 개발, 지도, 운영 관리할 수 있는 강사로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스킬 등이 있는 자를 말하며, “Senior Coach”는 CS직무와 관련된 사항이나 CS교육에 대해 효과적이고 능률

적으로 지도 전달해 줄 수 있는 강사로 교육과정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자를 지원 자격요건에 맞게 선발하여 CS교육을 통한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표 1]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2004년 ~ 2009년)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점수	72.0	75.3	79.4	81.6	84.9	88.9

[표 2] CS전문기관 위탁교육 현황(2004년 ~ 2009년)

구분	교육인원(명)	교육비(원)	교육과정	교육기관	대상자	환급액
계	5,181		-	-	-	-
2004년	434	214,859,000	서비스 리더십	한국능률협회컨설팅 행동과학훈련원	각 기관 3급 이상	-
	829		CS 기본과정		각 기관 4급 이상	-
2005년	570	190,670,000	CS 기본과정	삼성에버랜드 서비스아카데미	각 기관 4급 이하	-
2006년	747	260,404,200	CS 기본과정	삼성 CS 아카데미	각 기관 4급 이하	-
2007년	647	225,452,326	CS 기본과정	삼성 CS 아카데미	각 기관 4급 이하	교육비의 25%
2008년	695	255,064,953	CS 기본과정	삼성 CS 아카데미	각 기관 4급 이하	교육비의 24%
2009년	266	441,689,100	서비스 리더십	삼성 CS 아카데미	각 기관 관리자	교육비의 20%
	993	66,633,000	CS 심화과정		지사 팀별	교육비의 20%

[표 3] CS교육 추진 기관별 업무분장

구 분	본사(■■■■처)	국토정보교육원(인재개발실)
사무분장	CS교육 기획	CS교육 운영 및 관리

[표 4] CS아카데미 운영 및 교육 추진(성과) 현황

구분	CS아카데미			공공기관고객만족도		대상자
	횃차	사용일수	교육인원(명)	점수	등급	
2010년	59	118	1,761	92.3	우수	전직원
2011년	27	81	823	97.2	우수	
2012년	15	67	459	93.1	우수	
2013년	14	66	405	91.9	우수	
2014년	2	6	42	97.1	S등급	
2015년	없음	없음	없음	진행중	진행중	교육을 하지 않음

[표 5] CS강사 정원

기관별	CS강사	계	본사	교육원	연구원	◇◇	부산 울산	★★	☆☆	◁◁	◀◀	대전 충남	▶▶	♠♠ 전남	대구 경북	♣♣	♣♣
정원	Master Coach	3 (+3)	0	1 (+1)	0	1 (+1)	0	0	1 (+1)	0	0	1 (+1)	0	1 (+1)	1 (+1)	1 (+1)	0
	Senior Coach	4 (+4)															

[표 6] CS아카데미 강의장 및 CS 사내강사 현황

구분	강의장	CS 사내강사 현황
국토정보교육원	CS교육을 위한 전문 강의장 개원	3명 선발(Master Coach), 현재 없음
2015년 현재 운영 현황	운영 안함	1명 지역본부(측량인력), 1명 공간정보연구원(연구직인력), 1명 감사실(감사인력: 청렴강사)로 인사이동
		지역본부별 CS강사(Senior Coach) 운영: 5명 - ◇◇지역본부, ☆☆지역본부, ◁◁지역본부, ♠♠전남지역본부, ♣♣지역본부

[표 7] CS강사 구분, 자격요건 및 선발방법

구분	관련지침 내용	
CS강사	Customer Service 사내강사란 공사의 서비스 품질향상, 창의적 문제해결, CS 문화형성을 위한 CS관련 전문교육과정을 개발(지원), 지도, 운영관리 등을 할 수 있는 자를 지칭하며, Master Coach와 Senior Coach로 구분한다.	
	Master Coach	CS와 관련된 교육과정을 개발, 지도, 운영 관리할 수 있는 강사로,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스킬 등이 있는 자를 말한다.
	Senior Coach	CS직무와 관련된 사항이나, CS교육에 대해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지도 전달해 줄 수 있는 강사로, 교육과정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자격요건	Master Coach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이고, 강의강력이 3년 이상 또는 교원 자격이 있는 전문강사급 수준의 자격과 능력을 갖춘 자
	Senior Coach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자로서 일반강사급 수준의 자격과 능력을 갖춘 자
선발방법	Master Coach선발은 ■■■■처에서 주관(Senior Coach선발은 각 지역본부에서 주관)하되, ○○처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하며, 내부공모와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면접심사에서 80점 미만을 받은 자는 불합격 처리하며, 필요할 경우 부서장(또는 지사장·사업단장)의 추천서를 첨부하도록 할 수 있다.	

1. CS아카데미 운영 소홀

공사는 [표 1]과 같이 공공기관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우수등급을 달성하기 위해 2009년 4월 29일 사장 지시사항으로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수립 CS교육 부문”에 따라 국토정보교육원 CS아카데미를 개원 운영하여 [표 2]와 같이 CS전문기관 위탁교육에 소요되는 교육예산을 크게 절감 하였다.

또한 CS아카데미를 통해 맞춤형 CS교육을 [표 4]와 같이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공사의 숙원이던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5년 연속 우수등급을 달성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공사의 역할, 기능 확대에 따른 2015년 국토정보교육원 교육방향이 공사표준역량모델에 기반한 직급별 기본교육과정으로 개편되어 국가공간정보 허브기관으로서의 위상확립을 위한 공간정보과정 확대, 사회트렌드 및 교육수요를 반영한 직무전문 교육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어, 맞춤형 CS교육이 CS아카데미에서 하지 못하는 등 [표 4]와 같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위 공사에서는 공사의 역할, 기능 등 위상 변화와 서비스 영역 확대에 따른 고객서비스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공사 서비스가 민간영역으로서의 서비스 확대에 대한 대응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CS아카데미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고객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새롭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2. CS교육 운영 미흡

공사의 주요사업인 지적측량사업에서 공간정보, 해외, 교육,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확대 및 강화하고 있어 CS교육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공사에서는 [표 4]와 같이 공사의 서비스 영역 확대로 고객중심의 CS교육을 통한 고객만족도 지속적 우수등급 유지와 지속가능한 서비스체계를 유지하고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또한 [표 5], [표 6]과 같이 7명이던 CS강사가 현재 5명으로 축소 운영되고 있고 CS와 관련된 교육과정을 개발, 지도, 운영 관리할 수 있는 강사로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스킬 등이 있는 Master Coach가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위 공사에서는 Master Coach를 [표 7]과 같이 선발하여 CS교육의 고품질화를 통해 공사의 역할, 기능 등 위상변화와 공공기관 기능 조정 및 공간정보, 해외, 교육,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조치할 사항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처장)은 CS아카데미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고객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새롭게

추진하시고, Master Coach를 선발하여 CS교육의 고품질화를 통해 공사의 역할, 기능 등 위상변화와 공공기관 기능 조정 및 공간정보, 해외, 교육,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상임감사

통 보

제 목 SLA(서비스 수준 관리) 종합평가에 관한 사항

관 계 기 관 한국국토정보공사 본사 ▽▽▽▽▽처

내 용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서는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업무를 외부 기관에 위탁하고 있다.

「정보자원운영규칙」 제40조에 운영책임자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해 외부 기관에 유지관리를 위탁할 수 있으며, 같은 규칙 제43조에 따라 정보시스템 위탁관리 기관과 “서비스 수준 관리(이하 SLA⁴⁾라 한다.)”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서비스를 분류하고 각 서비스별 평가 항목과 기준을 설정하고, 설정된 평가 항목은 주기적 측정하여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고, 운영 서비스의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표] 정보시스템 SLA 협약 체결 현황

계약 건명	계약 기간	용역 회사	계약 금액	계약방법
정보자산 통합유지관리	2014. 5. 1.~2015. 12. 31.		1,027,499,000	SLA협약
ERP	2015. 4. 1.~2015. 12. 31.		196,686,490	SLA협약
KPMS	2015. 4. 1.~2015. 12. 31.		15,941,400	SLA협약
EAMS	2015. 4. 1.~2015. 12. 31.		20,500,000	SLA협약
전자우편 시스템	2015. 4. 1.~2015. 12. 31.		23,007,600	SLA협약
사규관리 시스템	2015. 4. 1.~2015. 12. 31.		10,530,000	SLA협약

4) SLA(Service Level Agreement):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사용자가 제공될 서비스 및 그와 연관된 여러 조건들에 대한 서로의 책임과 의무사항을 기술해 놓은 협약서

계약 건명	계약 기간	용역 회사	계약 금액	계약방법
e-감사시스템	2015. 4. 1.~2015. 12. 31.	(주)미래기술	40,316,430	SLA협약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SLA 운영계획」⁵⁾ 및 각 제안요청서에 매월 서비스 수준평가와 계약기간 종료시점에서 종합평가 실시를 통하여 85점(우수) 이상의 평가를 받을 때에는 연장계약 여부에 활용하고 있다.

그런데도 위 공사에서는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SLA 운영계획」 종합평가방법은 월평균점수에서 누적 감점을 차감하도록 되어 있어 이미 월평가에서 반영된 감점을 종합평가에서 이중으로 감점 적용하고 있다. 또한 2014년에 실시한 「정보자산 통합유지관리」 종합평가는 담당자가 월별로 평가한 내용을 내부 직원 6인 같은 방법으로 평가하였으며, 평가결과는 동일한 결과가 나와 종합평가의 실효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처장)은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연장계약을 위한 SLA 종합평가 시 정보시스템 이용자의 체감수준^{정보시스템 만족지수} 및 위탁관리기관의 상주인력 등에 대한 복지만족도 등을 고려하여 SLA 종합평가 지표를 신설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5) ▽▽▽▽▽처-1785(2015.04.27.)

한국국토정보공사 상임감사

권고요구

제 목 정보시스템 장애이력관리에 관한 사항

관 계 기 관 한국국토정보공사 본사 ▽▽▽▽▽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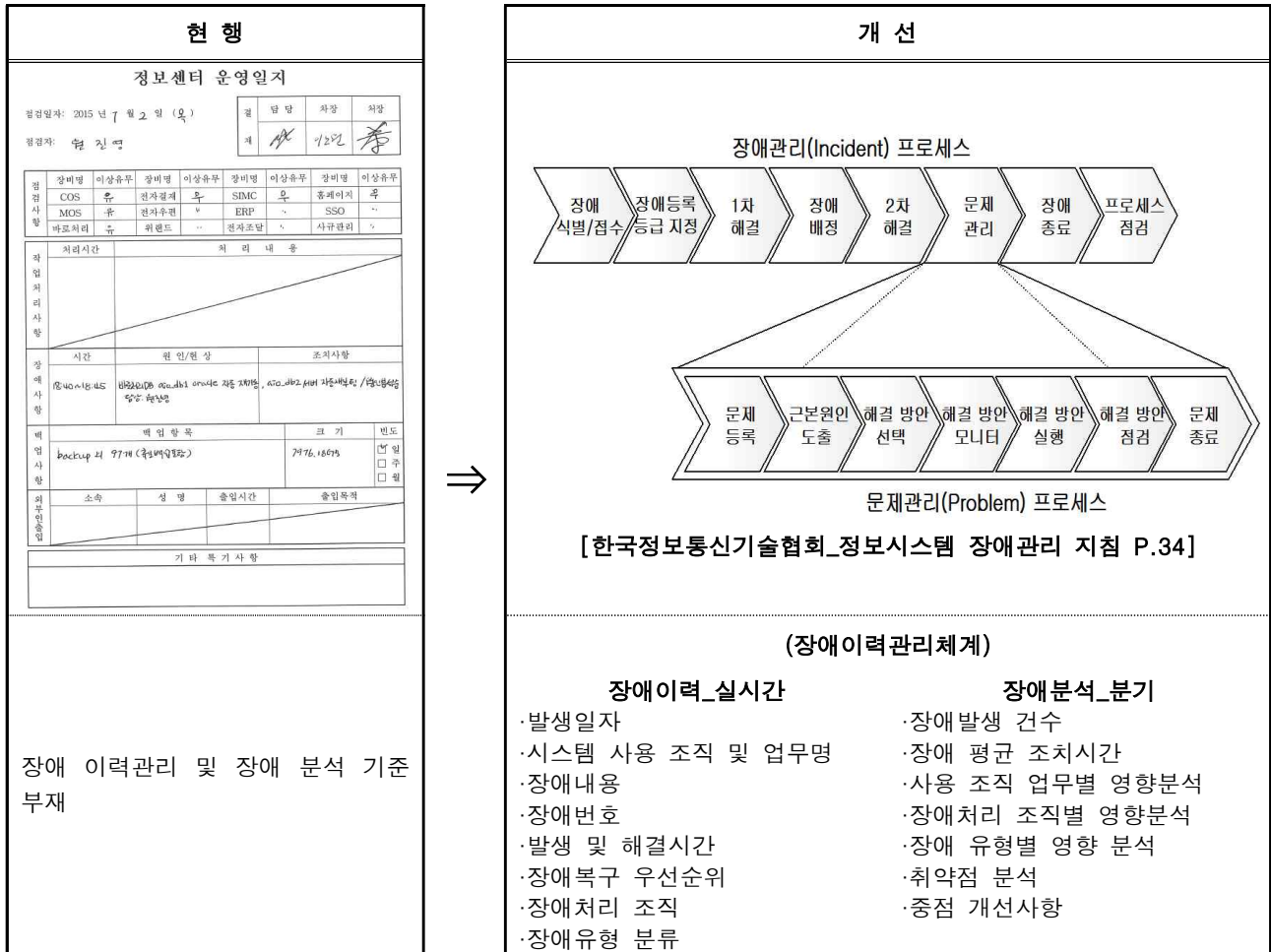
내 용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서는 정보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국가공간정보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장애관리, 장애 모의훈련, 백업 관리, 장애재해복구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

「정보자원운영규칙」 제27조 제1항에 정보자원에 고장, 장애, 현저한 성능저하가 발생한 경우에는 응급조치를 취하고 유지관리업체에 통보하여 장애복구를 신속하게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37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별지 제1호 “정보센터 운영일지”에 장애사항을 기록·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표 1]과 같이 주요 정보시스템의 장애발생에 대한 이력을 관리하여 재발방지,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및 장애 대응능력 향상 등에 활용하여야 한다.

[표 1] 정보시스템 장애이력관리 체계



그런데 위 공사에서는 주요 정보시스템 장애 이력 관리 현황을 살펴보면 [표 2]와 같이 수기 일지로 작성되어 장비별 또는 주요 시스템별 장애 이력을 분석하기 어려우며,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업체로부터 매월 보고받는 지원보고서의 장애조치 내용이 “정보센터 운영일지의 장애사항”과 별도로 관리되고 있다.

[표 2] 정보시스템 장애 이력 관리 현황

이력자료	내용	자료관리 유형	기록주체	기록시기
정보센터 운영일지	시간, 원인/현상, 조치사항 ⁶⁾	수기대장	시스템 담당자	일단위
지원보고서	시간, 장애처리 지원내용 등	수기대장	위탁관리자	일단위(매월 제출)

6) 「정보자산운영규칙」 제37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별지 제1호 정보센터 운영일지

또한 [별표]와 같이 주요 시스템 장애 발생 현황을 보면 주기적 현황 파악 및 동일 장애 발생에 대한 분석 등을 통한 정보시스템의 장애관리 및 문제관리 활동이 적절히 이루어진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조치할 사항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처장)은 국가공간정보의 실시간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하여 정보자원에 대한 장애관리 및 문제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장애이력관리”를 체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주요 시스템 장애 발생 현황

시스템	장애발생 건수		(B)-(A)	비고
	2014년(A)	2015년(B)		
C4C	2	3	1	
CDP 다운	1	0	-1	
COS	0	2	2	
DRM	3	0	-3	
EAMS 다운	1	0	-1	
ERP DB 다운	1	0	-1	
ERP	16	6	-10	
ERP 전자결재연동	1	0	-1	
EXA DB	0	2	2	
IP 전화기 다운	1	0	-1	
kmDB	0	1	1	
MOS	11	5	-6	
SIMC 서버 다운	7	0	-7	
SQL DB 다운	4	0	-4	
가상계좌	2	0	-2	
가상화 서버 모두 다운	3	0	-3	
네트워크	2	0	-2	
바로처리DB	2	5	3	
바로처리 GIS 다운	2	0	-2	
바로처리콜서버	1	0	-1	
방화벽 오류	1	0	-1	
백본	0	1	1	
백업 서버 오류	1	0	-1	
사규서버 다운	1	0	-1	
스토리지가상화	2	0	-2	
웹메일	7	0	-7	
위랜드	4	0	-4	
전자결재DB	0	2	2	
전자결재	13	4	-9	
전자조달 다운	2	0	-2	
침수흔적DB	1	0	-1	
통합인증 다운	3	0	-3	
향온향습기	1	0	-1	
홈페이지 DB 오류	1	0	-1	
홈페이지	1	3	2	
계	98	34	-64	

한국국토정보공사 상임감사

개선요구

제 목 해외사업추진(목표, 관리 등)에 관한 사항

관 계 기 관 한국국토정보공사 본사 ◆◆◆◆◆처

내 용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서는 아시아, 아프리카, CIS 국가⁷⁾ 등 개발도상국 및 전략적 협력국가(러시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자메이카, 칠레, 베트남, 모로코 등)에 토지등록제도와 측량기술 수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4조(공사의 사업)에 따르면 “공간정보·지적제도에 관한 외국의 기술의 도입, 국제교류·협력 및 국외 진출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고,

위 공사 「정관」 제37조(사업)⁸⁾에서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라 “해외에서 사

7) 과거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공화국, 즉 소련에 속한 나라들 가운데 12개국이 소련의 소멸과 함께 결성한 정치 공동체(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시, 몰도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스스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공화국, 그루지야)를 말함.

8) 1.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4조제1호부터 제6호에 정한 사업
2.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2호의 사업으로서 다음에 정하는 사업
가. 기본공간정보를 활용한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지원 사업
나. 「국토기본법」의 국토조사를 기반으로 한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지원 사업
다.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을 위한 공간 빅데이터에 관한 지원 사업
라. 그 밖에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으로 부터 위탁받은 사업
3. 지적전산 관련 자료를 활용한 정보화사업 및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업
4. 「공간정보산업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받은 품질인증기관에 관한 사업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6. 공사의 각종 시설과 자산 활용을 통한 수익사업
7. 그 밖에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결한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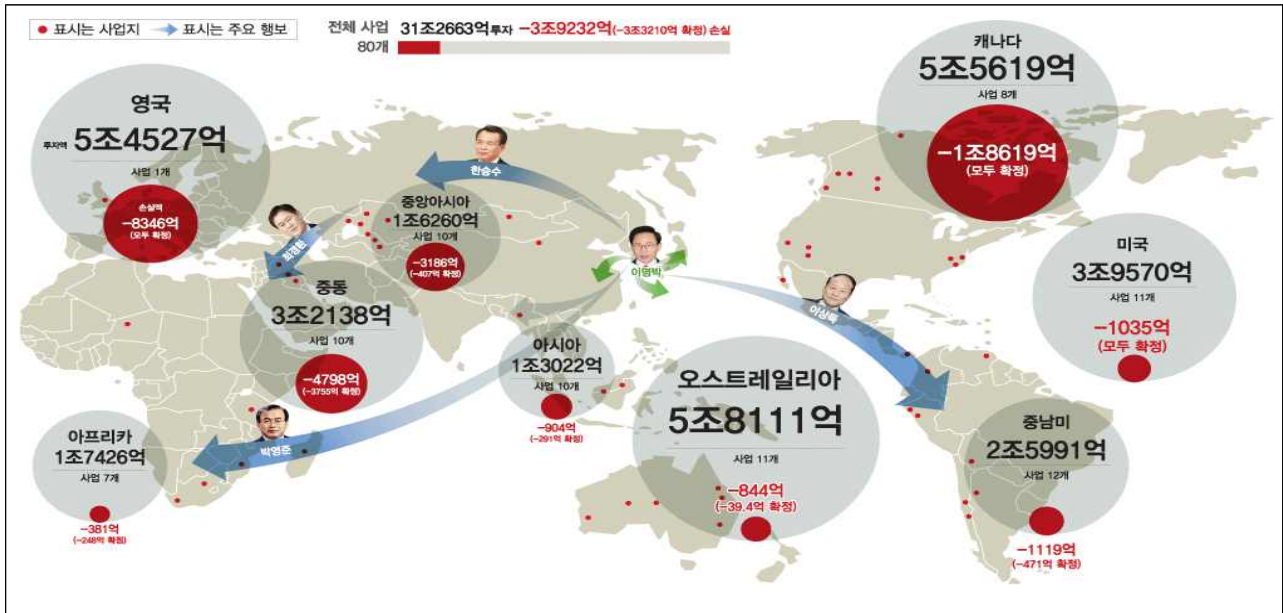
업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해외투자 사업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2014. 12. 23. ㉔㉔㉔㉔부)에 따라 「해외사업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사업별 투자 타당성 및 국가·환율·금리 위험 등에 따른 투자위험관리 기본계획(Contingency Plan) 등을 심의 의결하고, 위 공사 「정관」 제32조 제1항 6호의 규정에 따라 이 사회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고, 재무·법률 전문가와 민간 전문가를 반드시 포함한 “해외사업 리스크관리위원회(이하 ‘리스크관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해당 사업부서가 아닌 재무·감사부서 등에서 참여하여 견제 역할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표 1] 정부 및 공기업 자원외교 실패 및 비리사례(언론보도자료 재구성)

구분	사업명	국가	실패원인
1	볼리비아 유유니 광산	볼리비아	리튬개발권 해당 국가에서 직접 행사하기로 함
2	캐나다 하베스트 인수	캐나다	하베스트 비싼가격에 인수로 비용손실
3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산	마다가스카르	계약내용의 4배가 되는 가격으로 매입
4	이라크 석유개발	이라크	IS 로 인한 투자이전부터 커다란 위험 발생
5	이라크 쿠르드 자치정부 계약 논란	이라크	한국정부와의기체결한 계약을 불인정
6	멕시코 볼레오 동광	멕시코	추가비용 1조원을 투입하지 않으면 부도 발생
7	페루 사비아페루 인수	페루	계약 조건에 묶여 생산된 원유를 국내로 반입불가
8	러시아 캄차카 석유광구	러시아	석유 광구 개발 사업 과정에서 ㉔㉔기업 관련 비리
9	미국 멕시코만 사업	미국	사업관련 비용이 ㉔㉔기업으로 유입됨
10	우즈베키스탄 나망간-추스트 원유 개발	우즈베키스탄	석유 탐사 사업 6년 동안 손실만 남음
11	우즈베키스탄 서페르가나-취나바드 유전 개발	우즈베키스탄	유전개발 사업 시추도 못하고 예산 낭비

[표 2] 정부 및 공기업 자원외교 현황도(언론보도자료 재구성)



한편, [표 1]~[표 2]와 같이 앞선 정부에서 국외 자원을 확보 개발하기 위해 외교사절을 보내고 정부에서 기업들에게 해외 투자를 지원하는 과정이 부실하여 결국 자원개발권 확보에 실패하거나 탐사권을 얻은 광구에서 자원을 찾지 못하거나, 인수한 기업의 가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 수조원의 손실이 발생하였다.

[표 3] 공사 해외사업 실패사례 비용분석

□ 라오스 도로현황측량(2006. 4 ~ 2007. 6) / 계약금액 3억원

(단위: 천원)

수입금액	출장비	현장운영비	공사인건비	사업손익	미수금
100,000	27,488	85,952	355,060	△ 368,500	200,000

□ 베트남 토지개발조성측량(2007. 7 ~ 2008. 6) / 계약금액 6.4억원

(단위: 천원)

수입금액	출장비	현장운영비	공사인건비	사업손익	대손처리
60,000	7,105	137,461	323,200	△ 407,766	580,000

※ 베트남 사업 미수금 5.8억원에 국내 발주처의 폐업으로 인한 요건 충족으로 2013년에 대손처리

□ 자메이카 토지행정관리사업(2010. 4 ~ 2012. 5) / 투자금액(장기대여금) 1,691,800천원(1,538천USD)

회수금액	출장비	현장운영비	공사인건비	사업손익	미회수금
352,000	9,500	270,957	575,430	△ 503,887	1,339,800

또한 위 공사에서도 [표 3]과 같이 2006년~2007년에 계약한 라오스 및 베트남 해외사업을 추진하면서 해당국가 정부와 국내민간 업체 간에 이루어진 계약을 위 공사에서 하도급 받아 참여한 측량용역으로 당시 CEO의 강력한 해외 진출 의지에 의해 사업타당성 및 리스크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진행되어 과다 용역 및 미수금이 발생하였으며, 2010년 시작된 자메이카 정부와 컨소시엄(공사-현지업체)간 계약을 공사가 토지등록사업을 위한 운영자금을 투자하고 발생한 수익을 배분받는 형식이었으나, 지나치게 낙관적인 시장분석과 현지의 대내외 비즈니스 환경 분석의 미비 등 해외사업 직접운영 경험 미숙으로 실패한 사례가 있다.

[표 4] 2015년 해외사업 목표 및 추진 현황(2015. 11. 23. 현재)

(단위: 원 / %)

구분	목표		계약		추진실적(완료)		비율(%)			
	건수(A)	금액(B)	건수(C)	금액(D)	건수(E)	금액(F)	A:C	B:D	A:E	B:F
업무량	5	2,506,000,000	3	820,000,000	3	432,500,000	60.0	32.7	60.0	17.3

[표 5] 2015년 해외사업 사업목표 취소 및 사업비용 지출 현황(2015. 11. 23. 현재)

(단위: 원)

사업명	목표금액	사업비용 지출	취소(지연) 사유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 여부
키르기즈스탄 ODA 사업	600,000,000	-	발주처(KOICA) 발주 지연 (12월 계약체결 예정)	×
방글라데시 EDCF 사업	500,000,000	14,260,190	발주처와 수출입은행간 협의지연 (‘16년 상반기 입찰예정)	×
우루과이 IDB 사업	606,000,000	-	IDB 본부 사업 금액 승인 지연 (12월 계약체결 예정)	×

[표 6] 2015년 현재 해외사업 미수수료 현황

(단위: 원)

사업명	계약금액	완료금액	수입금액	미수수료 금액
라오스 도로현황측량	300,000,000	300,000,000	100,000,000	200,000,000
자메이카 토지행정관리사업	1,691,800,000 (투자금액)	352,000,000	352,000,000	1,339,800,000 (장기대여금)

[표 7] 국내 통역사 선정 및 공사 인재풀 등록 현황(2014. 1. 1.~2015)

(단위: 명)

통역 주요 언어 현황	인원	통역사 선정	거주국가	공사 인재풀 등록여부
한국어-영어, 베트남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인도네시아어 등	8	코이카 추천	한국	등록되어 있지 않음

[표 8] 해외사업 리스크관리위원회 구성 현황(2015. 11월 현재)

(단위: 명)

구분	소속		성명	전문분야	직책	위촉기간
	분류	기관명				
1	기관	○○○	○○○	해외투자	자문위원	2014.3.4. ~ 2016.3.4
2		○○○○○은행	○○○	해외금융	금융자문실팀장	
3		○○○○	○○○	해외 컨설팅	평가팀 부장	
4	학계	◇◇과학기술대	○○○	해외전략	건축학부 교수	
5		○○대학교	○○○	다자개발은행 사업	국제대학원 교수	
6	민간	○○회계법인	○○○	재무 및 회계	이사	
7		○○엔지니어링	○○○	해외투자 및 수주	사장	
8		○○엔지니어링	○○○	해외사업 리스크	前 전무이사	
9	내부	한국국토정보공사	○○○	법률 및 계약서	법률담당관	
10		한국국토정보공사	○○○	재무 및 회계	팀장	

[표 9] 해외사업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 현황(2015년)

(단위: 명 / %)

구분	개최일자	위원	참석 인원	불참 인원	불참자 명단	불참율	심의의결내용	재무·감사부서 참여요청 현황
1	2015.2.14.	10	4	6	○○○ ○○○ ○○○ ○○○ ○○○ ○○○	60.0	프로젝트 수주능력 배양, 해외 사업 중장기 계획 수립, 우리정 부와의 연계를 통한 사업추진 방향 등 전반적인 해외사업 추 진 전략에 대한 자문 실시	●●처 참여요청 감사실 참석요청 안함

공사에서는 위 내용과 같이 우리 정부 및 공기업 자원외교 실패 사례와 공
사 해외사업 실패 사례를 교훈 삼아 보완사항을 도출하여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내업체로부터 하도급 용역이나 공사의 직간접 투자사업은 공사

의 비즈니스 모델에서 제외시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내 ODA자금(KOICA, EDCF, ▲▲▲▲부 인프라 펀드)이나 다자개발은행(WB, ADB, IDB 등) 그리고 해당정부 자금으로 직접 발주하는 사업 중심으로 마케팅 및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그런데도 위 공사에서는 [표 4]~[표 9]와 같이 2015년 현재 해외사업 업무를 추진하면서 해외사업 목표 및 추진 현황, 해외사업 사업목표 취소 및 사업비용 지출, 해외사업 미수수료 관리, 국내 통역사 선정, 해외사업 리스크관리위원회 운영 등 해외사업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운영이 필요하다.

그 결과 해외사업 추진에 따른 리스크 발생 위험을 관리 통제할 수 있는 관련 규정 부재로 업무처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조치할 사항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처장)은 해외사업 추진에 대한 리스크 통제 방안 및 업무절차 프로세스 등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상임감사

권고요구

제 목 사택입주자 자격심사 불합리에 관한 사항

관 계 기 관 한국국토정보공사 본사 ▼▼▼▼실

내 용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서는 지방이전에 따른 직원 정주여건 안정화를 위해 ‘임시사택 및 직원숙소’(이하 “사택”)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택 입주 시 아래 [표-1]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사택입주각서를 징구하고 있다.

[표-1] 사택입주각서 주요 내용

1. 사택입주기간 준수
2. 입주자 준수사항 및 금지사항 준수
3. 퇴거 시 준수사항 및 사택의 명도 준수
4. 입주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물품의 원상복구 및 변상
5. 기타 관련규정 및 지침에 정한 제반사항 이행

「지방이전 공공기관 임시사택 및 숙소기준」 [▲▲▲▲부 지원정책과-1203, 2013.11.11.]은 ‘특별공급을 받은 자, 전매한 자, 이전지역 동일권역 내에서 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임차금을 지원받은 자’를 사택 입주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이전 공공기관 임시사택 및 숙소기준 Q&A」 [▲▲▲▲부 지원정책과-1389, 2013.12.10.]는 특별공급 당첨은 되었으나 계약을 하지 않은 직원도 일정 근무기간(3년 이상) 경과 후 직원숙소에 입주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택 입주자를 선정할 때 입주신청자의 특별공급 수혜여부를 확인하여 특별공급 수혜자가 사택에 입주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은 추첨을 통해 선정된 사택입주예정자의 특별공급 수혜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특별공급 수혜자로 사택입주자격이 없음에도 사택에 거주했던 자가 존재하는 등 사택입주자 자격심사 업무를 불합리하게 처리하고 있다.

조치할 사항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실장)은 특별공급 수혜자가 사택에 입주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택입주각서에 특별공급 수혜여부를 확인하는 서약을 징구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상임감사

통 보

제 목 사이클선수단 운영 및 관리 소홀

관 계 기 관 한국국토정보공사 본사 ▼▼▼▼실

내 용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서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직장 체육의 진흥) 제4항에 따라 사이클선수단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사 「사이클선수단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사이클선수단의 구성, 선수단의 운영, 훈련계획, 복무, 합숙소의 설치·운영, 보수, 초과근무수당 등에 대한 세부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1. 사이클선수단 훈련에 관한 사항

「사이클선수단 운영지침」 제8조(선수단 운영) 제1항 및 제2항에는 “지도자 및 선수의 주 근무지는 합숙소와 훈련장 등으로 하고, 선수단은 지도자의 책임 하에 운영하며, 지도자는 소속 선수에 대한 훈련일지(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지침 제9조(훈련계획)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지도자는 선수의 효율적인 훈련을 위하여 연간 훈련계획과 월간 훈련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제1항에 따른 연간훈련계획은 전년도 12월말까지, 월간 훈련계획은 전월말까지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표 1] 2015년도 사이클선수단 훈련계획 및 훈련일지 작성 현황

구 분	작 성 현 황
연간 훈련계획	2015년도 사이클선수단 운영계획(2014.12.29.) 붙임 '2015년 훈련계획 및 대회참가 계획'
월간 훈련계획	없 음
훈련일지	없 음

그러나 [표 1]과 같이 연간 훈련계획은 작성하여 제출하고 있으나, 월간 훈련계획은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았고, 소속 선수에 대한 훈련일지도 작성하여 비치하지 않고 있다.

2. 사이클선수단 초과근무에 관한 사항

사이클선수단은 ◀◀ ○○군 소재 합숙소를 주된 근무지로 하여 자체 합숙 훈련, 전지훈련 및 강화훈련을 실시하고, 국가대표 강화훈련, 각종 국내 및 국제 대회에 참가하고 있다.

「복무규정」 제6조(초과근무) 제1항 및 제2항에 “소속기관의 장은 업무형편상 긴급을 요하거나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근무시간 외에도 근무하게 할 수 있고, 초과근무는 특근명령부에 따라 명령한다.”고 되어 있다.

「사이클선수단 운영지침」 제16조(초과근무수당) 제1항에는 “지도자 또는 선수가 「복무규정」 제6조에 의하여 초과근무를 한 때에는 급여규정 별표 3의 “제수당지급기준표“에 따라 초과근무수당 및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초과근무산정기준」에 따르면 초과근무가 필요한 경우에는 특근명령부에 특근사유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소속기관의 장에게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고 (단, 사전 승인을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익일에 특근명령부를 작성

하여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내 일일출장 이외 숙박출장 기간 중의 초과근무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출장의 목적상 필연적으로 초과근무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사전 내부방침 및 특근명령에 따라 출장 중 또는 출장 후 명백히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초과근무 가능하며, 국외출장자 및 국외파견자는 초과근무 인정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특근명령부, 외출부 및 유연근무제 신청 등 ERP 근태관리 알림(▼▼▼실-5445, 2015. 6.16.)’을 통하여 직원들의 업무처리 불편을 해소하고 개인별로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근태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근태관련 수기장부(특근명령부, 외출부, 최종퇴실점검부 및 유연근무신청)를 폐지하고 ERP시스템으로 등록 관리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초과근무를 인정할 수 있으려면 초과근무한 사유를 ERP의 근태관리 에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소속 기관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며, 외부 기관에서 훈련할 경우에는 초과근무를 명백히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표 2] 사이클선수단 특근명령부 작성 등 현황(2015년)

구 분	작 성 현 황
출퇴근기록	없 음
특근명령부	• 1인 일괄 수기작성, 결재 일부누락(2015. 2월, 6월) • 특근사유: 개인 체력훈련(웨이트, 로라, 코어훈련)
초과근무수당 지급(월액)	• ○○○: 484,180원, ○○○: 458,070원, ○○○: 472,060원 ○○○: 464,890원, ○○○: 357,050원, ○○○: 350,410원

[표 3] 외부 훈련 및 대회 기간 중 초과근무 현황(2015년)

외부 훈련 및 대회				초과근무 현황
내 용	훈련기간	장 소	대상자	
국가대표 강화훈련	2015. 1. 5. ~ 1.31.	충청 일원	○○○	초과근무 9시간
아시아선수권 대회	2015. 2. 1. ~ 2.16.	태국 ○○○○○○	○○○	초과근무 10시간
국가대표 강화훈련	2015. 4. 7. ~ 4.17.	전남 ○○	○○○	초과근무 5시간
국가대표 강화훈련	2015. 7. 1. ~ 7.24.	경북 ○○	○○○	초과근무 10시간
국가대표 강화훈련	2015. 8. 2. ~ 8.12.	강원 <△	○○○	초과근무 10시간
국가대표 강화훈련	2015. 9. 1. ~ 9.16.	강원 <△	○○○	초과근무 10시간

그런데도 위 공사에서는 [표 2]와 같이 사이클 선수들에 대한 출퇴근기록이 없고, 특근명령부는 1인이 일괄 수기 작성하고 있으며, 초과근무 승인권자의 결재 없이 초과근무 수당이 지급되고 있다.

또한 외부훈련 기간에 사전 내부방침과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는데도 기존 특근명령부에 초과근무를 승인하고 있으며, 국외출장자는 초과근무 인정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는데도 초과근무 시간을 적용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합숙과 훈련이 많은 사이클선수단의 초과근무를 ERP의 근태관리에서 등록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외부훈련 기간 동안의 초과근무에 대하여는 사전에 명백한 기준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조치할 사항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실장)은 ① 사이클선수단의 효율적인 훈련을 위하여 연간훈련계획과 연계한 월간훈련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일일 훈련일지를 작성하여 비치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② 사이클선수단의 초과근무 등의 근태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외부훈련 기간 중의 초과근무에 대한 인증기준과 초과근무 등의 근태를 ERP에서 등록 관리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상임감사

통 보

제 목 승강기 유지관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관 계 기 관 한국국토정보공사 본사 ▼▼▼▼실

내 용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서는 「재무규정」 제40조와 「자산관리규칙」 제5조에 의하여 본사 자산(건물) 분임취급자가 ▼▼▼▼실장으로 되어 있다.

본사 승강기 관리주체인 ▼▼▼▼실에서는 승강기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승강기를 유지·관리하고 있다.

1. 승강기 자체점검 및 관리 소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7조에 따르면 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 운행의 안전에 관한 자체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점검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하며 승강기 관리주체가 자체점검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유지관리업자에게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승강기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안전행정부 고시 제2014-30호, 2014. 7. 1.) 제19조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유지관리담당자 및 자체점검 실시 내용 등이 기재된 별지 제11호 서식의 승강기 관리카드별표 1 참조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에 따라 공사는 현대엘리베이터와 ‘승강기 유지관리용역 계약’을⁹⁾ 체결하

여 승강기의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계약의 내용’으로 공사 승강기의 정상적이고 양호한 운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1개월에 1회씩 ‘종합유지관리시방서’에서 정한대로 자체점검과 급유, 조정, 청소, 부품교체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며, 또한 매월 1회 원격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제공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도 위 공사에서는 아래 [표 1]과 같이 2014년도의 경우 총 11회 중 5회, 2015년도의 경우 총 11회 중 2회에 걸쳐 계약서상의 내용과 다르게 7개월의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며 자체점검 일지에 결재를 누락하였다.

또한 매월 1회 원격점검을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4. 2. 1.부터 현재까지 총 22회 중 2회(2015년 9, 10월분)만 실시하는 등 승강기 운행의 안전에 관한 자체점검 및 원격점검을 소홀히 하였고, 자체점검 실시내용 등이 기재된 승강기 관리카드를 기록·관리하지 아니하는 등 승강기 자체점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소홀히 하였다.

-
- 9) - 「○○부-557(2014. 2. 3.)_‘승강기 유지관리용역 계약」에 의하면 공사와 현대엘리베이터는 공사 승강기 3대의 유지관리비와 원격 제어비를 포함하여 월 759,000원(부가세 포함)의 금액으로 2014. 2. 1. ~ 12. 31.까지 승강기 종합유지관리 계약을 체결하였다.
- 「▼▼▼▼실-222(2015. 1. 8.)_승강기 유지관리용역 실시」에 의하면 공사와 현대엘리베이터는 공사 승강기 3대의 유지관리비와 원격 제어비를 포함하여 월 759,000원(부가세 포함)의 금액으로 2015. 2. 1. ~ 2016. 1. 31.까지 승강기 종합유지관리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1] 엘리베이터 점검표 현황(2014. 2. 1. ~ 2015. 11. 19.)

점검일	특기사항	비고	점검일	특기사항	비고
			2015년 1월	점검미실시	
2014. 2. 19.	없음	결재 누락	2015. 2. 24.	없음	결재 누락
2014. 3. 27.	"	"	2015년 3월	점검미실시	
2014. 4월	점검 미실시		2015. 4. 24.	없음	결재 누락
2014. 5. 29.	없음	결재 누락	2015. 5. 11.	"	"
2014년 6월	점검 미실시		2015. 6. 23.	"	"
2014. 7. 19.	없음	결재 누락	2015. 7. 24.	"	"
2014. 8월	점검 미실시		2015. 8. 20.	"	"
2014. 9. 19.	없음	결재 누락	2015. 9. 14.	"	"
2014년 10월	점검 미실시		2015. 10. 14.	"	"
2014년 11월	"		2015. 11. 19.	2호기 브레이크 센서 접촉 / 불량으로 운행 중지	08:10 ~ 09:40
2014. 12. 29.	없음	결재 누락			
계	5회 미점검		계	2회 미점검	

주: 엘리베이터를 정면에서 바라보았을 때 왼쪽이 1호기, 오른쪽이 2호기이며 화물기가 3호기임

2. 중대한 승강기 고장의 보고 및 고장·수리일지 작성 소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 5에¹⁰⁾ 따르면 승강기 관리주체는 그가 관리하는 승강기로 인하여 승강기 내에 이용자가 갇히는 등의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3일 이내에 건물명, 소재지, 고장 발생 장소, 고장 발생 일시, 고장 내용, 피해 내용과 사람이 갇힌 경우에는 갇힌 사람의 수 및 구출기관의 종류 및 응급조치 내용을 관리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10)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6조의4제1항 전단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거나 승강기 내에 이용자가 갇히는 등의 중대한 고장"이란

- 1) 정상적으로 문이 열려야 하는 구간에서 멈추지 않거나, 해당 구간에서 멈추었으나 문이 열리지 않은 경우
- 2) 문이 열린 상태에서 운행된 경우
- 3) 호출층 또는 지시층으로 운행되지 않은 경우
- 4) 최상층 또는 최하층을 지나 계속 운행된 경우
- 5) 승강장문의 조립체가 이탈된 경우를 말한다.

또한 「승강기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안전행정부 고시 제2014-30호, 2014. 7. 1.) 제15조에 따르면 안전관리자는 승강기의 고장·수리내용을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별표 2 참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표 2] 엘리베이터 고장 현황(2014. 2. 1. ~ 2015. 11. 19.)

고장일	주요 내용	비고
2014. 2. 3.	승강로 and PIT and CWT 불량_(사람 간힘) (22:40 ~ 23:10)	2호기
2014. 4. 11.	엘리베이터 문 작동 불량_(사람 간힘) (09:30 ~ 10:30)	1호기
2014. 8. 12.	HALL DOOR 작동 불량_(사람 간힘) (13:15 ~ 13:40)	2호기
2015. 2. 4.	승강로 and PIT and CWT 불량_(사람 간힘) (12:10 ~ 12:31)	2호기
2015. 2. 4.	승강로 and PIT and CWT 불량_(사람 간힘) (12:12 ~ 13:05)	1호기
2015. 6. 30.	소음으로 인한 고장으로 점검 (09:30 ~)	2호기
2015. 7. 15.	메인보드 불량으로 운행중지	1호기
2015 11. 19.	브레이크 센서 접촉 불량으로 운행중지 (08:10 ~ 09:40)	2호기
계	8회	

자료: 현대엘리베이터 자료 및 공사 중앙감시실 점검일지 참고

그런데도 위 공사에서는 [표 2]와 같이 2014. 2. 1.부터 현재까지 총 8회 중 5회(2014. 2. 3. 외 4)의 중대한 고장에 대하여 관리원의 장에게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승강기 고장·수리일지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등 중대한 승강기 고장의 보고 및 고장·수리일지 작성에 관한 사항을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실장)은 ①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및 「승강기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 등에 규정된 관련 업무처리 요령을 준수하여 승강기의 안전성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② 공사 내 전 기관에 설치·운용되고 있는 승강기에 대한 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승강기 안전성 확보 및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업무처리 절차 매뉴얼을 작성·배포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상임감사

개선요구

제 목 유연근무자 근태관리에 관한 사항

관 계 기 관 한국국토정보공사 본사 ▼▼▼▼실, ○○처

내 용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서는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가족 중심문화를 지향하고,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근로시간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자율적·창의적인 조직문화 달성을 목적으로 유연근무제를 운영하고 있다.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제2조 제2항에 ‘탄력근무’라 함은 복무규정 제4조(근무시간)에서 정한 직원의 1주 40시간 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직원 스스로 자신의 출·퇴근 시간, 근무시간 및 근무일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시차출퇴근형¹¹⁾, 근무시간선택형, 집약근무형, 재량근무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 본사 ▼▼▼▼실에서는 「유연근무자 근태관리 철저 협조 요청」¹²⁾ 문서로 2014년 10월부터 본사 탄력근무자에 대하여 분기별로 근태리더기 미체크 3회 위반 시 탄력근무 강제해지 및 6개월간 신청을 금지하도록 하였다.

또한 ○○처에서는 유연근무 활성화를 위하여 유연근무^{탄력근무} 승인권한을 기관장에서 부서장 및 지사장으로 위임하도록 「유연근무제 운영지침」을 2015. 6. 18.자로 개정·시행하였다.

11) 시차출퇴근형: 1일 근무시간 8시간의 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출근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근무형태

12) ▼▼▼▼실-7541(2014.09.26.)

따라서 복무담당부서 및 유연근무 승인자는 유연근무자의 객관적 근태기록을 위하여 분기별로 근태리더기 기록을 조사하여 위반사례에 대한 강제해지 및 승인을 제한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공사에서는 2014년 10월부터 본사 유연근무자 출퇴근현황을 조사한 결과, [별표 1]과 같이 분기별로 3회 이상 근태리더기 미체크 위반한 직원에 대하여 유연근무 강제해지 및 승인제한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

또한 ○○지역본부 유연근무자 근태기록을 조사한 결과 [별표 2]와 같은 위반사례가 발생하였다. 위반사례 중 근태리더기와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이하 ERP라 한다.) 연동오류 등으로 근태기록이 누락되거나 잘못 기록된 경우에는 ERP에서 출퇴근기록 정정을 신청하여야 하고, 휴가와 출장 중복으로 근무상황 카드의 근태현황이 잘못 기록된 때에는 복무담당부서에 근태현황 정정신청을 하여야함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그 결과 자기계발 및 가사형편 등의 이유로 일반 직원과 다른 근무시간을 적용하는 유연근무자의 복무관리^{출퇴근}가 소홀한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실장)**은 ① 유연근무자의 객관적 근태기록 유지·관리를 위하여 2014. 9. 26. 본사 직원을 대상으로 시행한 「유연근무자 근태관리철저 협조 요청」 문서를 전 기관으로 확대하여 운영하시기 바라며, 임직원의 출퇴근기록 등 근태기록 오류발생 시 ERP 정정신청 절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장)은 ② 유연근무 직원에 대하여 근태기록이 불량한 직원에 대하여 「유연근무제 운영지침」에 유연근무 승인을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상임감사

통 보

제 목 일상감사 의뢰 소출

관 계 기 관 한국국토정보공사 본사 ▼▼▼▼실, ●●●●●●, ▲▲처, □□
□□실, ○○○○○○실, ○○처, ▽▽▽▽▽처

내 용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서는 일상감사 범위에 포함된 업무를 추진할 때에는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에 앞서 일상감사를 받아 시행하고 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감사기관의 장은 자체감사기구가 소속된 기관의 주요 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심사하는 일상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다.

「감사기준시행세칙」 제48조(일상감사의 목적)에 따르면 “일상감사는 공사의 업무 중 감사가 정한 일정 범위의 업무에 대하여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심사하는 사전 예방적 감사를 말한다” 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세칙 제49조 제1항에 따르면 “일상감사의 범위는 본사의 경우 별 표5에서 정한 사항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로 되어있다.

[표 1] 별표5. 일상감사의 범위(본사)

1. 정관, 사규 및 지침의 제정, 개정 및 폐지
2. 운영계획 수립 및 변경 가. 사장, 부사장, 이사, 본부장의 결재를 필요로 하는 각 부서의 주요 운영계획 및 변경 사항
3. 소송가액 1억원을 초과하는 소송과 중재
4. 사장의 결재를 필요로 하는 주요방침 및 건의사항
5. 예산의 편성, 경정, 전용, 이월사용, 예비비 지출
6. 지출에 관한 사항 가. 비용예산, 자본예산 - 매 건당 50,000천원 초과 나. 선금금의 지급 및 정산 - 매 건당 1,000천원 초과 다음 사항은 제외한다. 1) 정기적으로 지출되는 인건비 2) 국내출장 및 부임여비 3) 제세공과금 및 공공요금 4) 월정액의 고정경비 5) 사전에 감사의 협의를 받은 사항 6) 기타 부서장의 전결 사항
7. 계약의 방침결정, 계약심사, 체결 및 계약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가. 추정가격 3,00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 구매, 용역 그 밖의 계약 나. 추정가격 5,000만원을 초과하는 공사 및 수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
8. 결산, 가결산, 잉여금의 처분 및 세무조정
9. 자금의 차입 및 상환
10. 자금계획의 수립 및 운용
11. 자산관리에 관한 사항 가. 물품의 수급관리계획 나. 고정자산의 불용동의 및 손·망실 다. 부동산 임대차 및 처분등에 관한 사항
12. 직원의 상벌
13. 이사회 부의사항
14. 국외 출장계획
15. 매 건당 50만원을 초과하는 업무추진비
16. 정부 경영지침과 관련한 방침사항
17. 기타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따라서 위 [표 1]에 해당하는 업무를 추진할 때에는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에 앞서 일상감사를 의뢰하여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를 받아야 했다.

[표 2] 일상감사 미 의뢰 업무 현황

건 명	부서명	담당자	일상감사의 범위
2015년도 기관장 경영성과협약 이행실적평가 관리계획(안)	●●●●●●		사장의 주요방침
2015년도 정부 경영실적평가 관리계획(안)	●●●●●●		사장의 주요방침
2015년홍보우수본부및유공직원 평가 계획(안)	▲▲처		직원의 상벌

건 명	부서명	담당자	일상감사의 범위
(세계측량사연맹) 관련 업무이관 계획(안)	□□□□실		사장의 주요방침
2014년 신규사업 우수기관 및 우수직원 표창계획(안)	○○○○○○○실		직원의 상벌
2015년 공간정보 보안업무 추진계획(안)	○○○○○○○실		부서의 주요운영계획
2015년 2차 전문경력직 채용계획(안)	○○처		부서의 주요운영계획
2015년도 정보보안업무 세부 추진계획(안)	▽▽▽▽▽처		부서의 주요운영계획
망분리 및 GA 추진 방향성 설정을 위한 클라우드 컨설팅 추진계획(안)	▽▽▽▽▽처		부서의 주요운영계획
사이클선수단 인력운영 계획 검토 보고	▼▼▼▼실		부서의 주요운영계획

그런데도 위 공사에서는 [표 2]와 같이 “2015년도 기관장 경영성과협약 이행실적평가 관리계획(안)” 등 10건에 대하여 일상감사 대상 업무 임에도 일상감사 의뢰를 하지 않는 등 업무처리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실장 등)은 「감사기준시행세칙」 등 관련 규정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상감사 의뢰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상임감사

통 보(적극행정 면책)

제 목 중요기록물 전산화 DB구축 용역에 관한 사항

관 계 기 관 한국국토정보공사 본사 ▼▼▼▼실

내 용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서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기록물의 전자적 생산·관리) 및 「기록물 관리요령」에 의해 소중한 기록 자산을 디지털화하고 있다. 훼손이 심한 고문서를 복원하여 보존의 안전성과 국민의 알권리인 행정정보 이용의 효율을 높이하고자 정부 3.0 수행과제의 일환으로 “중요기록물 전산화 DB 구축용역” 1차 사업을 2014. 9. 22. 일반경쟁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여 (주)××소프트와 용역계약(금액: 1억 9,800만 원, 기간: 2014. 10. 14~2014. 12. 31.)을 체결하여 위 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2015. 10. 2.에는 “2차 중요기록물 전산화 DB구축사업”으로 위 동 업체와 계약(금액: 2억 377만 원, 기간: 2015. 10. 30~2016. 1. 27.)을 체결하여 기록관 보유 중요기록물 300,000면의 전산화, 훼손이 심한 중요 고문서 500매의 수리복원 등 전산화 구축사업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1. 중요기록물 전산화 DB구축 세부사항 확인

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요기록물 전산화 DB구축사업은 공사의 소중한 기록자산 및 훼손가능성이 있는 대상 기록물을 분류, 보수, 정리 공정을 거쳐 ▲▲▲원 분류기준지침에 의한 문서편철과 보관 분류하여 전산화하는 과정으로 중요기록물 DB 구축 1차사업(비전자 기록 30,000권 전수조사, 400,000면 전산화) 검사를 완료하였다.

2011년 ▲▲▲▲ 원에서 고시한 ‘기록물 DB구축 작업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 작업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으며, 기록관리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한 규격도 충족하였음을 GS인증과 행정업무용 SW인증을 받은 공정관리시스템의 기능명세서로 확인하였다. 또한 데이터 육안검수를 과업량의 10%인 40,000면 진행하여 ‘기록물 DB구축 작업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3% 육안검수 기준을 충족했다.

현재 진행 중인 중요기록물 전산화 DB구축 2차사업은 300,000면의 본사 보유 중요기록물을 전산화하고, 훼손이 심한 것으로 사전조사 된 ○○○○○○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고문헌 500매의 수리복원을 사업범위로 하고 있다.

그러나 검사조서 제출 시 전체 준공 자료에 대한 목록이 실물로는 확인되지만 검사조서에 검사 세부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준공 절차상 문제가 있으니 중요기록물 전산화 DB 구축 2차사업 인수 시에는 세밀하게 검사하여 시정하고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2. 중요기록물 전산화 DB구축 사업 보안관리 및 준수

용역업체는 공사의 보안정책 및 시스템관리 운영정책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수행 기간 중 및 사업종류 후 「정보보안업무처리지침」 제49조(용역사업 보안관리)에 따라 보안유지에 힘써야 하며 주요 데이터 등 정보누출에 대비하여 구체적인 정보보호, 보안관리 계획 및 수립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데이터나 자료, 도서 등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사익성을 지닌 타 용도에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를 대비하는 보안각서^(정보보안업무처리지침-별지6호 서식)를 징구하여야 하며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계약업체 인원은 누출금지 정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보안 서약서^{(보안조치 시행 확약서-}

별지7호 서식)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업체는 사업 수행 중 인원,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등 아래의 보안관리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항을 조사한 결과 1차 사업 당시 공사에서 주관하여 1회의 보안교육을 진행하였으며, 투입인력에 대한 보안각서와 보안서약서를 징구받았으며, 과업 진행에 사용된 공정관리시스템의 기능요건에 문서보안 및 사용자보안 기능이 탑재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사업 종료 시에 제출받는 “대표자용 보안각서” 및 “참여자용 보안 각서”를 누출금지 정보의 범위를 포함하여 공사에 제출하였다.

[표] 누출금지 정보의 범위

번호	누출금지 정보범위
1	공사 내 전산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전산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의 개인정보
5	‘보안업무지침’ 제28조1항의 대외비
6	용역사업 결과물: 개발소스, 코드, 데이터, 분석자료, 연동 및 연계정보 구축에 따른 모든 생성 정보
7	정보시스템 운용현황
8	방화벽·IPS 등 정보보호제품 설정 정보 및 보안규칙 정보
9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계약업체는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에서 전자우편 등으로 공사와 자료 송수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암호화 등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수발신해야 하며, 사업수행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하는 부분은 기록물 DB구축 작업실의 네트워크웍이 오프

라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데이터유출은 USB포트 미활성 및 봉인지 부착으로 검증하였다.

그러나 위 공사에서는 중요기록을 다루는 현장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및 공사의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소홀히 하였다.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교육의 중요성을 누차 강조하여 최소 한 달에 한번 이상의 공사가 요구하는 보안교육을 실시 및 참석하도록 권고한다.

3. 2015년 한국국토정보공사 기록물 외부평가

자연재해^(태풍, 홍수, 호우, 대설, 지진) 및 사회재난^(화재, 폭발, 화재사고) 등 비상상태발생 시 공공기관의 기능을 유지하고 조직 및 이해관계자의 법적·재정적 권리보호를 위해 중요기록물이 손실되거나 유실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존·관리하기 위한 대책으로 2014년부터 중요기록물 전산화 DB구축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부 산하 ▲▲▲▲원에서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중앙기록물관리기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기록관리 평가)에 따라 매년 중앙행정기관, 교육청,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각 기관의 기록관리 운영성과를 평가·분석하여 법령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각 기관의 자체평가를 통해 공공기관의 기록관리 역량 강화 및 우수사례를 강화하여 국가 기록관리의 발전과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위 공사에서는 그동안 외부 지적사항으로 기록관리 계획 미수립,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미채용, 기록관리 담당자 지정과 업무 보장 미흡, 기록물 보유현황 조사 미실시 등 중요기록물 관리에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소홀히 처리하였

다. 그 결과 2013년, 2014년 기록관리 시범평가 결과¹³⁾ 23.3점, 53점으로 기록물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평가 되었다.

[표] 2013년, 2014년 분야·지표별 평가결과

구 분	총점		기록관 운영		기록관리 업무		기록정보시스템 등	
	2013년	2014년	2013년	2014년	2013년	2014년	2013년	2014년
배점	86	92	45	47	31	36	10	9
득점	20	48.8	8.0	23.0	7.0	19.0	5.0	6.8
100점 환산 점수	23.3	53.0	17.8	48.9	22.6	52.8	50	75.6
득점수준	불량	미흡	불량	불량	불량	미흡	보통	보통

그러나 위 공사에서는 외부기관 개선 요청사항을 적극 수용하여 체계적인 기록관리 위한 기록물 지도 감독, 기록관 운영 강화, 전담인력 확충, 전담인력의 업무분장 편성, 주요 기록물의 철저한 등록 및 관리를 강화하여 2014년부터 기록관리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채용을 시작으로 중요기록물 400,000면의 전산화를 완료하고 지역본부 기록물 30,000권을 전수조사하여 체계적인 기록관리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그 결과 2015년 ▲▲▲▲부 ▲▲▲▲원 기록관리 기관평가에서 공공기관 기록관리 현황을 점검한 결과 전년도 “라 등급”에서 금년도에는 “나 등급”인 93점을 획득하여 기록관리 평가대상 230개 공공기관에서 우수기관으로 도약하였으며 장관표창 대상 후보기관으로 선정¹⁴⁾되었다.

13) 2013년 기록관리 시범평가 결과 통보(▲▲▲▲원 ”””과-2159, 2013. 11. 8.)

2014년 기록관리 평가결과 통보(▲▲▲▲원 ”””과-2004, 2014. 10.. 20.)

※ 등급구간: 가등급(100~95점), 나등급(94~85점), 다등급(84~75점), 라등급(75점 미만)

14) 2015년 기록관리 유공 포상 후보자 추천(평가결과 우수기관 선정): ▲▲▲▲원 ”””과-2157(2015. 11. 04.)

[표] 2015년 분야·지표별 평가결과

구 분	총점	기록관 운영	기록관리 업무	기록정보시스템 등
배점	100	40	40	20
득점	93.0	36.0	40.0	17.0
100점 환산 점수	93.0	90.0	100	85.0
득점수준	우수	양호	우수	양호

조치할 사항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실장 등)은 중요기록물 전산화 DB구축 완료 후 「계약사무처리규칙」 제54조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검사를 완료하시기 바라며, 「용역사업 보안관리 방안」에 따라 인원, 문서, 장비 등 제반사항에 따른 보안계획, 관리, 교육, 정보유출에 대한 제재조치 등 미흡한 부분에 최선을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감사기준시행세칙」 제79조에 의해 공사의 이익 창출과 적극적인 업무자세로 임하여 업무개선, 공사홍보, 외부포창 등 공사 기록관리 역량강화와 우수사례를 외부에 전파하여 기록물 관리의 경쟁력에 기틀을 마련한 점을 높이 평가하여 적극 면책 요건인 공익성, 타당성, 투명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용하고자 한다.

다만, 전자적 관리기반 구축을 위한 기록물의 체계적인 정리에 대한 요구와 신속한 검색 및 활용을 위하여 기록관리시스템(RMS) 통합서비스 도입이 시급하며 이에 따른 중요기록물에 대한 보존성 향상효과가 크다고 판단된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상임감사

개선요구

제 목 계약제 직원 경력인정에 관한 사항

관 계 기 관 한국국토정보공사 본사 ○○처

내 용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서는 공간정보산업을 선도하고 공간 정보산업과 연계한 전문 계약제 직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획경영직, 정보전문직, 교수직 및 연구직을 채용하여 업무에 효율성을 기하고 있다.

「계약제직원관리지침」 제14조(보수) 1. “계약제 직원의 기본연봉, 부가급여, 성과연봉 등은 담당업무의 특성, 근무연한 등을 고려하여 [표 1]과 같이 지급한다. 다만, 사장은 우수 전문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급여규 정제6조에서 정한 자격수당 지급대상 자격에 준하는 채용분야의 자격 소지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연봉 하한액을 초과하여 연봉을 책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표 1] 계약제 직원 연봉책정 기준(기본급)

구 분	기 본 연 봉 액(천원)		비 고
	상 한	하 한	
1급 상당	-	<u>59,687</u>	- 연봉책정기준 : 봉급, 상여금, 자격 및 직무수당, 가계지원수당, 효도수당 - 1~3 급상당 상한액의 책정은 특별한 자격, 경력, 능력 등을 감안하여 사장이 결정한다. 다만, 입사당시 근무경력이 1급 18년, 2급 15년, 3급 12년 이하인 경우에는 직급별 하한액_4급 9년, 5급 6년 이하인 경우에는 각 직급별 최저호봉인 1호봉으로 본다.
2급 상당	-	<u>52,306</u>	
3급 상당	-	<u>45,327</u>	
4급 상당	최고 호봉	4급 1호봉	
5급 상당	최고 호봉	5급 1호봉	

위 공사에서는 [표 1]과 같이 계약제 직원 연봉책정 기준에 의해 1~3급은 성과연봉제로 연봉 하한액만 규정하고 상한액은 사장이 결정하고 있다. 또한 4급 이하인 경우에는 직급별 요구되는 최저 경력 연수를 제외하고 호봉제에 기반한 연봉을 산정하고 있다.

[표 2] 계약제 직원 채용 현황

소속	성명	직렬	직급	입사일자	입사당시호봉
▼▼▼▼실	○○○	계약직	○급	2014-01-09	21
▼▼▼▼실	○○○	계약직	○급	2015-07-06	19
▼▼▼▼실	○○○	계약직	○급	2014-01-09	18
▽▽▽▽▽처	○○○	정보전문직	○급	2014-04-28	17
▽▽▽▽▽처	○○○	정보전문직	○급(갑)	2014-04-28	11
▽▽▽▽▽처	○○○	정보전문직	○급	2014-04-28	10
▼▼▼▼실	○○○	기획경영직	○급	2015-01-05	9

[표 3] 국토정보직 평균 근속연수

구 분	4급	5급	6급	7급(갑)	7급(을)
직급별 최고호봉(직원 봉급액)	30호봉	32호봉	24호봉	16호봉	13호봉
직급별 평균근속연수 (국토정보직 기준)	26.3년	18.2년	6.9년	3.4년	2.6년

그러나 위 공사에서는 [표 2] ~ [표 3]과 같이 4급 이하 계약직의 경우 채용조건 및 직급과 관계없이 경력증명서로 인정되는 모든 경력을 호봉으로 환산하여 연봉 계산을 산정함으로써 국토정보직 평균근속연수를 1~14호봉을 상회하고 있다. 따라 직급별 최저호봉만 규정되어 있고 상한선이 없어 직급별 최고호봉까지 연봉산정이 가능하여, 낮은 직급의 고액연봉자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계약제 직원의 채용조건(해당분야 경력 5년, 10년 이상 등) 및 직급에 부합하는 호봉으로 경력 상한기준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처장)은 「계약제직원관리지침」과
관련한 계약제 직원의 채용조건 및 직급에 부합하는 호봉으로 합리적인 경력 상
한기준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상임감사

개선요구

제 목 교육훈련여비 규정에 관한 사항

관 계 기 관 한국국토정보공사 본사 ○○처

내 용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서는 임직원 등이 공사의 업무로 여행을 하는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일반적 사항은 「여비규정」을, 교육훈련 여비에 관한 사항은 「교육훈련규정」을 적용하여 여비교통비를 지급하고 있다.

「여비규정」 제6조(여비의 결제 및 정산) 제1항 및 제2항에 “국내 여행자가 여비 중 운임과 숙박비를 결제할 때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여야 하고, 국내 여행자는 여행을 마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주일 이내에 운임과 숙박비의 세부 사용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고 별표3의 여비정산청구서를 작성하여 회계관계 직원에게 운임과 숙박비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같은 규정 제13조(여비지급의 예외) 제1항에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여비의 정액을 감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1일 출장의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000원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표 1] 교육훈련여비 지급 현황(2015년)

구 분	교육훈련여비 적용 현황	비 고
여비 증빙서류	운임과 숙박비 지급 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사용	일부 누락
여비정산청구서	각 출장자로부터 여비정산청구서 작성 및 제출	일부 누락
기 타	본부 직장교육 시 동일건물 지사에서 일비(20,000원) 지급	일부 사례

공사 대부분 기관(부서)에서 교육훈련 여비를 지급함에 있어 [표 1]과 같이 증빙서류, 여비정산청구서 신청 등 「여비규정」 제6조(여비의 결제 및 정산) 등에 따라 일반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교육훈련여비 지급에 관한 규정

「교육훈련규정」 제11조(교육훈련 여비) 교육대상자로 선발된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에서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교육훈련규칙」 제7조(교육여비 지급 기준) ① 연수교육 등 내·외부 교육과정 대상으로 선발된 직원에게는 「교육훈련규정」 제11조 또는 「여비규정」 제18조¹⁵⁾의기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국외 장기위탁교육 대상자에게는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을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하고 국내 장기위탁교육 대상자는 장기파견교육 대상자 여비지급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

그러나 교육훈련여비 지급에 관한 규정에는 위와 같이 근무지내와 근무지외, 합숙과 비합숙에 따른 여비 적용에 대한 규정만 있고 증빙서류, 여비의 결제 및 정산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갖추어 있지 않다.

따라서 위 공사에서는 교육훈련 여비를 지급함에 있어 교육훈련 여비 지급의 증거서류, 여비정산청구서 등의 결제 및 정산과 교육훈련 여비지급의 예외 등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15) 제18조(국외여행) ① 국외여행의 경우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의 국외여비 지급표(별표 4)에서 사장은 제1호 나목, 감사는 제1호 다목, 상임이사 및 부설기관장, 지역본부장은 제1호 라목, 1급 및 2급 직원은 제2호 가목, 3급 이하직원은 제2호 나목을 적용한다.

조치할 사항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처장)은 교육훈련 여비 지급의 증거서류, 여비정산 청구서 등의 결제 및 정산과 교육훈련 여비지급의 예외 등에 관한 내용이 명확히 규정될 수 있도록 교육훈련 관련 규정을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상임감사

권고요구

제 목 육아휴직 기간 중 승급에 관한 사항

관 계 기 관 한국국토정보공사 본사 ○○처

내 용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서는 「정관」 제28조(직원의 임명과 해임 등)에 따라 직원의 인사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인사규정」을 제정·운영하고 있다.

「인사규정」 제20조(승진임용의 제한) 제1항 제1호에 “승진임용 되는 직원이 징계처분, 직위해제 및 휴직 중에 있는 자는 승진 임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같은 규정」 제21조(승진소요 최저연수) 제3항에 “휴직기간은 1년에 대하여 재직기간 6개월의 비율로 합산한다. 다만, 제40조(휴직기간)¹⁶⁾ 제7호의 경우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1년에 한하여 재직기간에 산입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급여규정」 제19조(승급의 제한)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인사규정」 제20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기간과 「인사규정 제39조(휴직)¹⁷⁾ 제1항 제1

16) 「인사규정」 제40조(휴직기간) 제7호: 「인사규정」 제2항 제3호(육아휴직)에 따른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1년(여자 직원은 3년) 이내로 한다.

17) 「인사규정」 제39조(휴직):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2.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3. 천재지변 또는 전시 사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명확하지 않는 경우
4. 그 밖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경우

호 및 제3호와 같은 조 제2항 제1호, 제2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근무기간 계산에서 그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어 「인사규정」 제39조(휴직) 제2항 제3호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승급은 규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공사는 규정상으로 인사규정 제20조(승진임용의 제한) 제1항 제1호 및 제21조(승진소요 최저연수) 제3항에 따라 휴직(육아휴직 포함) 중인 자는 승진 임용할 수 없지만,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1년에 한하여 재직기간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급여규정」 제19조(승급의 제한) 제2항 제1호에는 승진임용 제한기간을 승급 제한하고 있어 「인사규정」과 「급여규정」이 서로 상충되고 있다.

반면에 「공무원 보수규정」 제14조(승급의 제한) 제1항에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등인(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한다.) 사람은 해당 기간 동안 승급시킬 수 없다. 그러나 「같은 규정」 제15조(승급기간의 특례) 제6항에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또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사유로 휴직한(육아휴직) 경우 그 휴직기간은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자녀 1명에 대해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만 산입하되,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휴직기간은 전 기간을 산입한다.”고 되어 있다.

5.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산재 요양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6. 면허 또는 자격증 소지를 임용요건으로 임용된 자가 해당면허의 취소 또는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어 담당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②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본인의 원에 따라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국외유학을 하게 된 경우

2.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을 필요로 하는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배우자 또는 자녀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만,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배우자가 직원이고 육아휴직 중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표] 육아휴직 승급 발령 사례

소 속	직. 성명	입사일자	휴직 기간	대상자녀	호봉 승급일자
본 사 △△△△실	기획경영 ○급 × × ×	2012. 4. 23.	2013.10.27. ~ 2014.10.26.	○○	2014. 5. 1.
			2014.10.27. ~ 2015.10.26.	○○	2015. 5. 1.
			2015.10.27. ~ 2016.10.26.	○○	
본 사 ■ ■ ■ ■ 처	국토정보 ○급 × × ×	2006. 4. 3.	2013. 9. 1. ~ 2014. 8. 31.	○○○	2014. 5. 1.
			2014. 9. 1. ~ 2015. 2. 28.	○○○	
			2015. 3. 1. ~ 2015. 5. 11.	○○○	미발령
			2015. 8. 10. ~ 2016. 8. 9.	○○○	
◇◇지역본부 --지사	국토정보 ○급 × × ×	2002. 3. 4.	2009. 7. 14. ~ 2010. 7. 13.	○○○	2010. 4. 1.
			2010. 7. 14. ~ 2011. 7. 13.	○○○	2011. 4. 1.
			2011. 7. 14. ~ 2012. 1. 1.	○○○	
			2012. 9. 30. ~ 2013. 9. 29.	○○○	2013. 4. 1.
			2013. 9. 30. ~ 2015. 9. 30.	○○○	2014. 1. 1. 2015. 1. 1.

그런데도 위 공사에서는 [표]와 같이 「급여규정」 제19조(승급의 제한) 제2항에 따라 휴직 중에 있는 자는 승급할 수 없음에도 「인사규정」 제21조(승진소요 최저연수) 제3항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1년에 한하여 재직기간에 산입한다는 규정”에 근거하여 육아휴직 기간에 승급 발령 조치를 하고 있으므로 「공무원 보수규정」의 승급에 대한 특례조항을 참조하여 「인사규정」과 「급여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처장)은 육아휴직 중에 있는 직원에 대한 승급 관련 「인사규정」과 「급여규정」을 재정비하여 관련 규정이 서로 상충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일련번호	2015-39
제 목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성공적인 출범

□ 요 지

- 사명변경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과제에 대한 성과관리를 통해 각 실무부서에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홍보·콘텐츠 제작 등 효율적 집행·운영을 위해 사명변경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 출범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 내 용

○ 선제적인 사명변경 준비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이 공포(2014. 6.)됨에 따라 한국국토정보공사로 차질 없는 출범을 위해 사명변경 준비 TFT 구성·운영(2014. 7.)

* 본사 각 실·처, 교육원 및 연구원 실무자 중심의 TFT운영

-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한 사명변경 준비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 실무자 중심의 TFT를 부사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전 직원이 참여하는 위원회로 개편(2015. 2.)

사명변경 TFT(2014. 7. ~ 2015. 1.)		사명변경 준비위원회(2015. 2. ~2015. 7.)	
운영주체	실무자	운영주체	임원, 실처장 및 실무자, 임직원
추진과제	각 부서별 단위과제	추진과제	전사과제, 부서별 단위과제
TFT	월별 추진실적 관리	위원회	월·주간 실적관리 및 협의회 운영

○ 사명변경 홍보활동 확대 및 가치 내재화

- (홍보활동) 의사결정체계 간소화를 통한 홍보 리플릿, 캐치프레이즈 제작 등에 효율성 제고 → 사명변경 위원회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해 홍보활동 강화

<포스터>



<현장홍보 리플릿>



<SNS, 표지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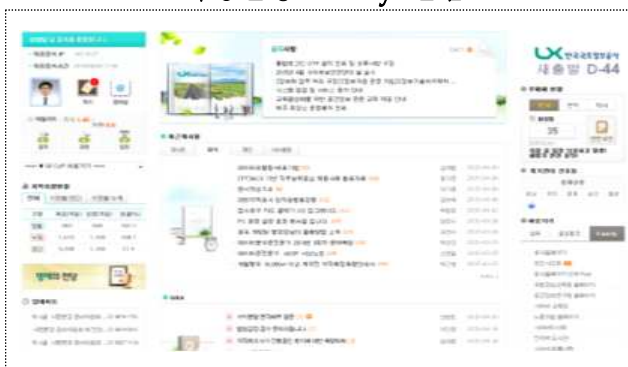


<옥외 전광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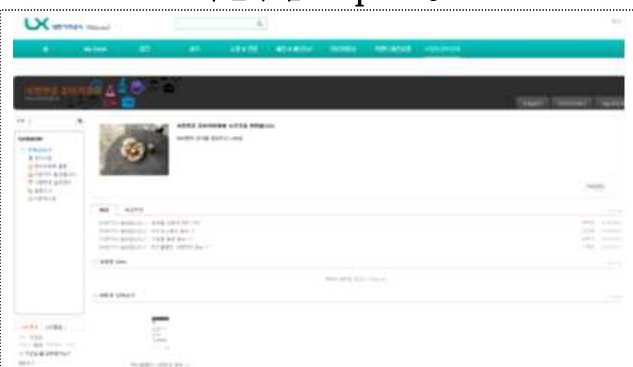


- (가치 내재화) 사명변경 필요사항에 대한 의견 수렴 Cop운영, 사명변경 일 알림, 법령 개정 자료 배포를 통한 임직원의 사명변경 가치 내재화

<사명변경 D-Day 알림>



<의견수렴 Cop 운영>



○ 사명변경 홍보, 사업전략 마련을 위한 콘텐츠 개발

- (개발목적) 출범식 당일(15.6.24.) 한국국토정보공사 역량 홍보 및 미래비전 제시를 위한 홍보 콘텐츠 제작 → 출범식 콘텐츠 부스 운영

기관	본사	교육원, 연구원	3개 지역본부
콘텐츠	- 통일은 내일 올 수도 있다 - LX기본공간정보, 국토정보의 초석입니다 - 국민과 함께 돈버는 공간정보	- 위성타고 떠나는 40년 국토여행 - 공간 빅데이터로 그리는 세상 - 동해와 독도, 고지도 속에서 진실 찾기	- 3D로 불로장생하는 문화유산 - 숨은 국토를 찾아드립니다 - LX, 우리나라에 안전을 입히다
	신기술 소개(UAV와 3D 프린터, 로봇, GPS 등)		



- (내부역량을 활용한 예산절감) 콘텐츠 개발 시 내부 임직원 역량을 활용하여 당초 요구예산 2.7억원 대비 1.4억원을 집행하여 예산절감 및 자체역량 강화

* 콘텐츠 부스 제작을 사명선포식 행사와 연계·추진하여 중복예산 집행 최소화

□ 추진결과

- (차질없는 한국국토정보공사 출범) 정관개정, 92개 행정관리과제 추진, 전사적인 홍보활동, 선포식의 성공적인 개최 등을 통해 원활한 제2의 창사 완료
- (사업 홍보) 콘텐츠를 통해 대국민·관련 기관 등에 공사의 새로운 역할 홍보

일련번호	2015-40
제 목	공적기능 강화로 2015년 대한민국 공공기관 지속지수 대상 수상

□ 요 지

- 공공기관의 지속지수를 조사하는 토마토 CSR리서치가 발표한 『2015년 대한민국 공공기관 지속지수』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전체 1위에 선정됨

□ 내 용

- (언론보도) News tomato (2015 공공기관 지속지수 위탁집행형) " 한국국토정보공사 1위" 보도 (2015. 10. 20.)
 - 한국국토정보공사가 『2015년 대한민국 공공기관 지속지수』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에서 전체 1위 선정됨
 - 조사결과(경제,사회,환경부문) 총점 735.47점(1000점 기준)을 얻어 영예의 1위
 - * 경제(381.78점)와 사회(213.69점) 4위, 환경(140점)부문에서 3위 등 전 부문에서 고른 성적 달성
 - 지난 6월 사명을 변경한 공사는 공간정보 기술개발 및 표준화, 해외 진출 지원 등 공적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축적된 공간정보를 국민에게 개방
- (시상식 참석) 준정부기관 위탁집행 종합대상 수상(2015. 10. 29.)

□ 추진 노력

- 공공기관의 지속지수를 조사하는 토마토 CSR리서치로부터 관련 자료 요청 및 실적치에 대한 검토 요구(8.21)
- 담당자 통화 등 적극적 대응과 지표별 사실 확인 후 검토의견 제출(8.27)

□ 기대효과

-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완수를 평가하는 “지속지수” 부문의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전체 1위를 달성하여 공사의 긍정적 이미지 홍보 효과
- 종합대상 수상과 관련된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경쟁군 내 비교우위 선점으로 우월성 확보 가능

(별첨 1) 2015년 대한민국 공공기관 지속지수 전체 순위

순위	기관명	지속지수 총점	경제부문 (500점)	사회부문 (300점)	환경부문 (200점)
1	한국국토정보공사	735.47	381.78	213.69	140.00
2	(재)○○단	729.77	386.31	223.46	120.00
3	○○공사	713.17	369.18	206.85	137.14
4	○○공단	707.55	398.62	198.36	110.57
5	○○공사	707.39	382.47	207.78	117.14
6	○○공사	701.60	371.68	215.63	114.29
7	○○공사	697.06	341.72	189.63	165.71
8	○○공단	674.96	361.48	222.05	91.43
9	○○공단	667.73	375.71	157.73	134.29
10	○○공단	645.44	320.63	181.95	142.86
11	○○공단	645.34	343.03	194.31	108.00
12	○○공단	637.93	354.59	195.91	87.43
13	○○공단	631.04	337.31	185.16	108.57
14	○○공단	617.75	371.73	208.88	37.14
15	○○공단	610.88	342.53	159.78	108.57
16	○○평가원	604.79	380.61	187.04	37.14
17	○○공사	596.76	370.10	189.52	37.14
18	○○공단	585.80	349.93	198.73	37.14

(별첨 2) 2015년 대한민국 공공기관 지속지수 대상 시상식 이모저모



일련번호	2015-41
제 목	중소기업 지원강화로 2015년 중소, 중견기업 혁신대상 수상

□ 요 지

- ◆◆◆◆◆부 주최 ◇◇◇◇◇신문 주관 2015년 중소, 중견기업 혁신대상 동반성장 부문 대상에 2년 연속 수상기관으로 선정됨

※ 대한민국 중소, 중견기업 혁신대상이란?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에서 지정한 중소기업으로 분류되어 있는 기업 중 독특한 수익모델이나 차세대 성장엔진을 통해 현재 혹은 미래에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업 및 동반성장에 기여한 대기업을 대상으로 시상

□ 내 용

- (선정규모) 2015.11.02. 동반성장위원회 최종심사결과 동반성장(경영혁신)부문 대상에 선정됨

구분	산업부분	▲▲▲▲ 장관상	동반성장 위원회 위원장상	○○○ 위원장상	●●● 청장상	○○○ 이사장상	◇◇◇ 사장상
기술 (제품) 혁신 부	첨 단 산 업	2	7	6	6	6	6
	녹 색 산 업						
	서비스,제조,기타						
경영 혁신 부	첨 단 산 업	2	7	6	6	6	6
	녹 색 산 업						
	서비스,제조,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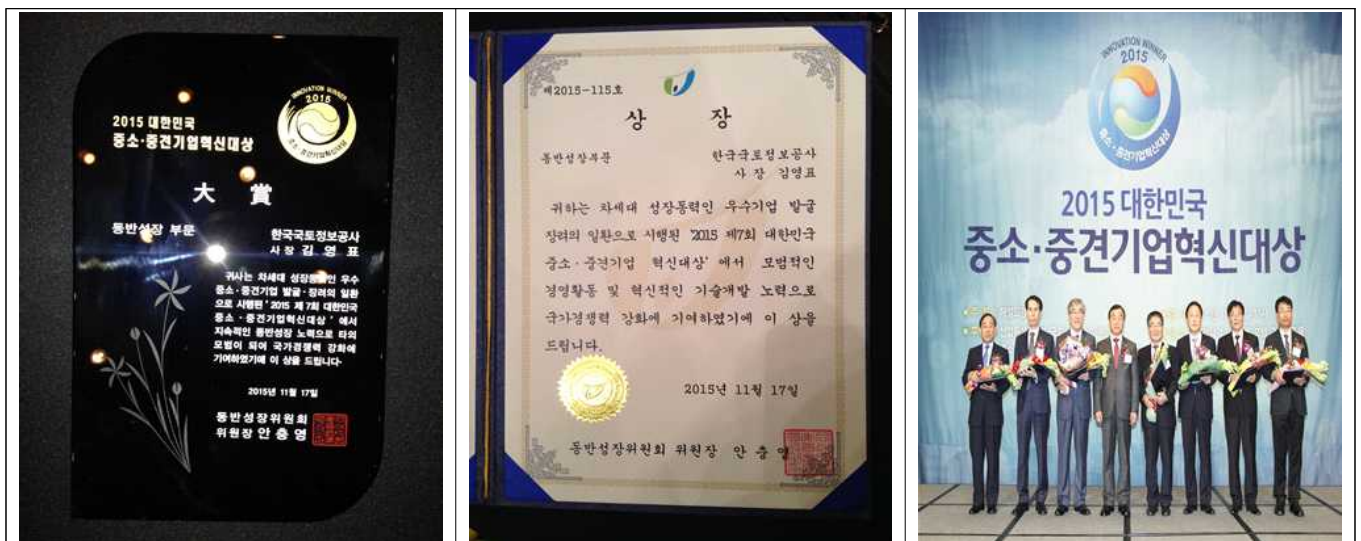
- (수상내용) 부문별 7개 기관 수상

- 수 상 일: 2015.11.17.(화)
- 훈 격: 동반성장 부문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상
- 수상기관: 한국국토정보공사, ★★★★★공사, 한국◆◆발전, 한국●●

발전, 한국○○○○○○공단, 한국●●공사, 한국○●공단

□ 추진 내용

- 2015.09.14. 제7회 「2015년 대한민국 중소, 중견기업 혁신대상」 안내 및 응모공고(◇◇◇◇◇신문-2015-104호)
 - (평가) 첨단산업, 기술제품혁신부문, 동반성장부문으로 구분하여 자문단 및 교수진으로 구성된 평가단에서 기업경영, 연구개발, 생산성 및 품질향상, 기업성과 및 가치창조 4개 부문 12개 항목을 평가함
- 2015.10.15. 대한민국 중소, 중견기업 혁신대상 3개 부문중 동반성장 부문 응모
- 2015.11.02. 최종심사결과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상으로 최종 확정 (◇◇◇◇◇신문 2015-156호)
 - 45개 공공기관 중 7개 공공기관 최종 확정(최종심사위원회에서 서류심사를 토대로 종합 심의하여 시상부문별 기관에 통보)
- 2015.11.17. 2015년도 중소, 중견기업 혁신대상 수상(●●●●●●●-3900)



□ 기대효과

- ◇◇◇◇◇신문 특집기사 게재로 공사 홍보(2015.11.17.)
-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행을 통한 기업가치 상승 및 대내·외 긍정적 이미지 구축
- 동반성장, 사회공헌 관련 보고서 추진성파로 활용

□ 향후계획

- 2015년 ○○○○부 정부경영평가 시 전략기획의 사회적기여 부문 비계량 평가지표로 활용
- 2015년 ◇◇◇◇◇부 동반성장 평가 시 기관장 평가에 비계량 평가지표 활용
- 향후 기관평가 및 마케팅 자료로 활용
- 지속적인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통해 3년 연속 동반성장 대상에 도전

일련번호	2015-42
제 목	LX홍보관의 다양한 관람객 유치로 공사 긍정적 이미지 향상에 기여

□ 요 지

- 공사의 신사업을 홍보하고 긍정적 이미지 형성을 위해 LX 홍보관의 방문객 다양화 추진.

□ 내 용

○ LX홍보관 방문객 다양화 추진을 통한 공사 긍정적 이미지 향상

- 공공기관-대학교 잡(JOB)멘토링사업 스페셜멘토링 행사 개최
 - ○○○○에서 지역 내 공공기관(25개 기관)과 추진하는 멘토링 사업의 스페셜멘토링 행사 추진: ▶▶도내 대학 대표 70명
- 고등학교 현장체험학습 추진
 - ○○○상고: 100명(최대수용인원 초과로 200명은 농촌진흥청에 협조요청)
 - ○○○정보고: 70명(공간정보특성화고로 학생주임과 직접 협의 추진)
- 전국지역 대학생 야외실습 수업 추진

구분	학교명	학과	야외실습 인원
1	●●●대학교	지리학과	70
2	○○대학교	지적학과	40
		토목공학과	40
3	㉠㉠대학교	사회환경공학부	50
4	◎◎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	40
5	◇◇◇대학교	GIS공학과	40
계	5개 대학교	6개 학과	280



※ LX홍보관 방문객 다양화 추진을 통해 당초 예상 방문객 1,000명

이었으나 11월말 현재 3,200명 유치.

□ 기대효과

- 학생들에게 진로학습 경험 및 미래직업 체험의 기회 제공
 - 현장에서 학문의 적용사례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공사 신사업 소개
 - 다양한 계층에게 공사 홍보를 통해 대국민 공사 인지도 향상에 기여
- * 광고비 절감효과: TV 광고비용 1초당 192천원(KBS 기준)

□ 향후계획

- 정부-지자체-공공기관-민간 간 협업을 위한 협의체 구성
- 혁신도시 공공기관 간 홍보관 연계 관람코스 개발
- 홍보관 연계에 따른 MOU 체결(이전기관 협의체, ►►교육청)

일련번호	2015-43
제 목	홍보부스 10대 콘텐츠 책자 발간을 통한 새 사명 및 공사 역할 변화 홍보

□ 요 지

- 홍보부스 10대 콘텐츠 책자 발간으로 공사의 새로운 사명과 역할의 변화를 효과적으로 알림

□ 내 용

○ 홍보부스 10대 콘텐츠 책자 발간 배경

- 2015년 6월 사명 변경에 따라, 새로운 사명 인지도 향상을 위한 홍보가 요구되었으며
- 사업 영역의 확대를 알리기 위해 공사의 홍보부스 운영, 관련 콘텐츠를 홍보하는 책자 제작 필요.

○ 홍보부스 10대 콘텐츠 책자 발간 결과

- 사명변경 출범식 기념 홍보부스 콘텐츠 책자 ‘LX, 국토에 가치를 더하다’ 발간
- ‘LX, 국토에 가치를 더하다’를 활용해 중앙언론에 기획 홍보
- ※사보협회 주관 ‘대한민국커뮤니케이션 대상’ 출판물 부문 최우수상 수상

○ 홍보부스 10대 콘텐츠 책자 발간 결과 장점

- 사업 영역의 확대를 알리기 위해 공사 신사업 콘텐츠를 홍보하는 책자 제작으로 언론을 통한 공사 사업 홍보 가능
- 우수 출판물 선정에 따른 2차적인 홍보 효과 기대

구분	10대 콘텐츠	장점	홍보 효과
1	LX, 국토정보에 안전을 입히다	저수지·산림·지하공간 등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국토를 지키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일보: 2015.06.25. / 기획보도 ☆☆일보: 2015.08.03.
2	위성타고 떠나는 40년 국토여행	지난 40년 동안 꿈과 열정으로 이룩한 상전벽해의 국토변화 모습을 보여줌	●●일보: 2015.07.06. / 기획보도 ◇◇합뉴스: 2015.07.11. △△△: 2015.07.29. □□일보: 2015.08.14.
3	사이버국토 구축을 위한 신기술	무인항공기와 3D프린터, 로봇과 함께하는 공간정보, LX-GPS와 만나는 스마트한 세상 등 3가지 기술을 소개하였음	▲▲▲ 방송: 2015.07.17. / 뉴스 ▲▲▲타임즈: 2015.08.24.
4	동해와 독도, 고지도 속에서 진실 찾기	고지도에 나타난 동해와 독도의 명칭변화를 역사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고지도가 말하는 진실을 담았음	□□일보: 2015.08.12. / 기획보도 □□매일: 2015.08.13.
5	LX기본공간정보, 국토정보의 초석입니다.	공사가 만들어 국민에게 서비스할 공간바탕 정보를 소개하였음	□□신문: 2015.09.10. / 기획보도
6	국민과 함께 돈 버는 국토공간정보	국민 누구나 창업하거나 비즈니스 활동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 갈 의지를 표명하였음	□□신문: 2015.09.10. / 기획보도
7	3D로 불로장생하는 문화유산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한 공사의 3차원(3D) 기술과 사례를 담았음	㉠신문: 2015.10.22. / 기획보도
8	숨은 국토를 찾아드립니다	무인항공기를 이용하여 섬·국공유지·그린벨트 등에 숨은 국토의 가치를 찾는 방안과 기술을 담았음	진행중
9	공간 빅 데이터로 그리는 세상	데이터가 새로운 오일이 되는 데이터기술 시대에 공간 빅데이터를 활용한 새 비즈니스 모델과 서비스 사례를 소개하였음	진행중
10	통일은 내일 올 수도 있다	급변 통일 시 북한주민의 정착과 생활안정을 위해 신속히 토지를 배분할 방법과 북한 국토정보의 구축방향을 수록하였음	진행중

□ 향후계획

- 홍보책자 주요 인사 배부를 통한 공사 업무 영역 홍보 강화
- 공사 10대 콘텐츠를 활용하여 주요 언론매체를 홍보로 타 언론매체의 연쇄
홍로 공사 인지도 및 국민체감도 향상과 이미지 제고와 위상확대 효과가 예
상됨

일련번호	2015-44
제 목	측량용품 고도화를 통한 현업지원으로 생산성 향상 도모

□ 추진배경

- 일선에서 사용하고 있는 측량용품의 성능개선 필요
 - 소자폴(2m)의 정확한 위치측정을 위한 수직원형기포의 정밀도 요구
- 현장업무처리를 위해 배부된 용품에 대한 사용자 검증 용품 필요
- 임야지역 측량시 시통이 어려워 타점시 장시간 소요

□ 추진내용

- 용품구입
 - 수직원형기포조정세트 25개, LED램프 30개 구입



- 시범운영
 - (기간) 2015.11.9.(월) ~ 11.20(금), 2주간
 - (대상) 업무활용도가 높은 지사 직원 본부 자체 선정후 배부
 - (결과분석) 시범운영 결과 분석을 통한 현업 맞춤형 용품 제작

□ 기대효과

- (수직원형기포조정세트) 소자폴 및 표간(2m)용의 정확도 향상으로 정확한 측량성과 제공
- (LED램프) 임야지역 및 장거리 업무처리시 업무활용도가 높으며 시통 시간이 단축되어 업무처리 시간 단축

□ 향후계획

- 측량용품 개선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한 설문조사 실시
- 수직원형기포조정세트의 경우 핀폴 및 표간(5m)용 포함 조정 가능 토록 개선 후 배부
- LED램프(임야측량용)의 고도화를 통한 측량용품으로 구입 배부

일련번호	2015-45
제 목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를 활용한 지적측량 新 수요 창출

□ 요 지

- 건축행정업무인 인·허가업무를 전자적으로 원-스톱 처리하는 ‘세움터’를 통해 인·허가증과 동시에 측량정보를 제공하여 新 지적측량 수요 창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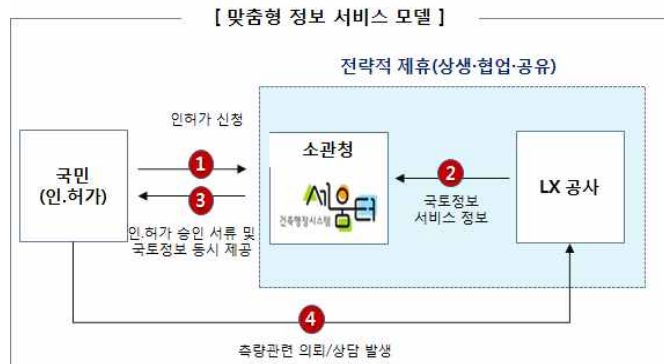
□ 내 용

○ 추진배경

- 지적측량 시장개방, 축소, 확정측량 민간이양 등에 따라 적극적인 새로운 지적측량 시장창출 노력 필요
- 현 지적측량 상담, 신청은 고객을 대상으로 기다리는 수동적 서비스로서 잠재고객에 대한 찾아가는 선제적 서비스 제공 필요
- 정부 및 LX 3.0 달성을 위해 정부 및 공공기관 간 소통·협력·상생 기반 확대를 통해 고객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구현 강화 필요
- 2014년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지적측량관련 유용한 정보 제공’에 해당하는 지원성 항목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남

○ 서비스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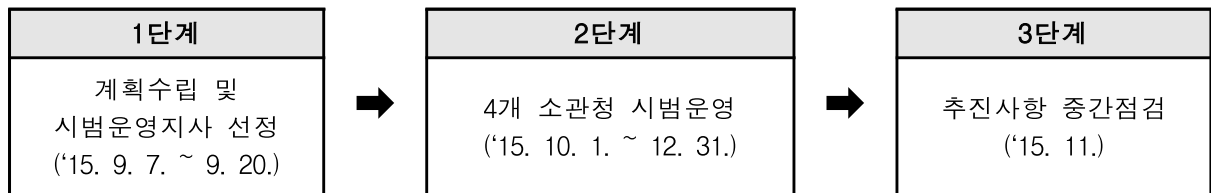
- 건축 인·허가증 발급 시 동시에 국토정보 서비스 정보를 통합 제공



○ 추진현황

- 4개 소관청 선정 후 국토정보 제공 서비스 시범운영('15. 10. 1. ~ 12. 31.)

< 그 간의 추진 현황 >



* ◇◇ ㉠구청, ㉡구청, ㉢구청, ▮▮ ▮▮군청, ►► ▮▮시 □□구청 총 4개 소관청

-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는 ▲▲▲▲부 ▼▼▼▼과 업무이나 각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고 있어 업무가 가중되는 특성에 대하여 부정적 견해가 있음
- 정부 3.0 달성을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 간 소통·협력·상생을 통해 국민에게 직접 수혜를 제공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지속 설명하고
- 건축 인·허가 승인 시 국민은 반드시 지적측량을 수반해야 한다는 것과 측량수수료, 사후서비스, 제조사 등 다양한 정보가 필요하다 설득하여
- 전국 4대 권역으로 구분하여 ◇◇, ◆◆, ►►, ◇◇ 소관청을 선정하였음

○ 추진실적

- 2015. 10.현재 4개 소관청 건축 인·허가 건수는 81건이고, 이 중 30건이 분할측량으로 신청되었으며, 인·허가 신청고객이 분할측량 외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연계 건은 11건임으로 신 측량 수요액은 625만 원임

< 추진 실적 >

지역본부	지사	소관청	10월 실적		
			인·허가승인 건수	인·허가승인 후 분할신청건수	측량연계건수 (금액)
합계	4개		81	30	11 (625만 원)
◇◇◇	○○○○	○○구청	11	3	1 (90만 원)
◆◆◆◆	○○	○○ 구청	14	2	1 (52만 원)
▷▷▷▷	▽▽	▽▽군청	15	16	6 (296만 원)
▶▶	▶▶	□□구청	41	9	3 (187만 원)

□ 문제점

- 인·허가 전에 대한 정보 취득이 어려워 제도 확산 후 확인이 다소 어려움
 - * 공공데이터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취득에 한계 발생
- 측량 중심의 정보제공에서 공간정보 등 주요사업 전체로 확대 필요
 - * 지적측량 종목, 수수료 감면 및 사후서비스, 지적재조사 사업 정보만 제공
- 보다 많은 국민을 대상으로 LX 주요사업에 대한 정보 제공 필요
 - * 現 ‘세움터’ 시스템만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다양한 국민 수혜 미흡

□ 대책수립

- (시스템 연계) 세움터와 공사 지적측량 바로처리센터시스템과 연계 추진
 - * 부동산행정정보를 직접 사용하는 것처럼 세움터와 바로처리시스템을 직접 연계
- (정보성 강화) 現 정보 외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제공으로 국민 수혜 극대화
 - * 지적측량 심화 정보, 공간정보 사업 정보 등 VOC를 분석에 따라 정보력 극대화
- (만족도 조사) 주요사업 안내자료 제공에 따른 고객 만족도 조사 추진
 - * 고객 요구사항 파악, 제공 정보에 대한 만족 수준, 문제점 및 개선사항 발굴

□ 기대효과

- (수익창출) 잠재고객을 이용고객으로 연계(전면확산 시) 후 10억 원 이상 수익창출

○ (고객만족) 국민 정보사각지대 해결 및 수혜 발굴로 고객만족도 S등급 유지

○ (정책실현) 정부와 공공기관 간 상생·협력으로 정부 및 LX 3.0 실현

< 추진 실적 >

성 과 지 표	목 표	산출근거
만족도 점수	95.0점	92.6점(전반적 만족도) + 2.4점(도전적목표) = 95.0점
수익액	10억 원	824,505원(3년 측량수수료 평균) × 1,200명 ≒ 10억 원

* 고객만족도 중 전반적 만족도는 '14년 고객사후만족도 조사 결과임

< 수익 창출 예상액 산출근거 >

구분	산출근거	산출액
'세움터'시스템 활용 국민 수	(A)	23만 명
최근 3년간 분할측량 고객 수	(B)	11만 명
세움터이용고객 중 분할측량 제외 고객 수	(C)=(A)-(B)	12만 명
측량연계 고객 수(예상)	(D)= (C)의 약 1% 수준	1,200명
최근 3년간 지적측량 평균 수수료	(E)	80만 원
수익 창출 예상액(전면 확산 시)	(F) = (C) × (D) × (E)	약 10억 원

< 정부 포털과 공사 연계성 현황 >

명칭	관리 및 운영	주요 서비스	LX와 연계성
세움터 (건축행정시스템)	▲▲▲▲부 (▼▼▼▼과)	- 건축물 인·허가 시스템	- LX 공사 홈페이지 배너(○) - 지적측량신청홈페이지배너(×)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	▲▲▲▲부 (⓪⓪⓪⓪⓪⓪과)	- 부동산 종합 증명서 발급 - 토지이동민원(분할,합병 등) - 부동산 가격 민원 등	- LX 공사 홈페이지배너(○) - 지적측량신청홈페이지배너(○)
온나라 (부동산종합포털)	▲▲▲▲부 (정보화통계담당관)	- 공시지가, 실거래가 등 - 토지이용계획, 인터넷 등기, 지도확인 등	- LX 공사 홈페이지배너(×) - 지적측량신청홈페이지배너(×)
민원 24 (대한민국정부민원포털)	▲▲▲▲부 (행정서비스통합추진부)	- 토지(임야)대장 열람·발급 -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전입신고 - 지방세목별과세증명발급 등	- LX 공사 홈페이지배너(×) - 지적측량신청홈페이지배너(×)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	▲▲▲▲부 (주소정책과)	- 도로명 조회 - 우편번호 조회 등	- LX 공사 홈페이지배너(×) - 지적측량신청홈페이지배너(×)

□ 향후계획

- (실적분석) 2015년 시범운영에 따른 실적 분석 후 2016년 사업계획에 반영
- (제도확산) '16년 확산시범운영, '17년부터 전면 확산 및 대책 적극 이행

일련번호	2015-46
제 목	LX-UAV 조기 정착을 위한 시장 개척 및 공적역할 강화

□ 요 지

UAV 기반의 공간정보사업 진출을 위해 공공성·수익성을 동시 수용 가능한 사업모델 개발과 시장창출로 관련 산업 활성화 및 공적역할 강화

○ 표준화·제도화 추진

- 산·학·연·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내 최고의 포럼 정례화 운영
 - ※ 포럼 사무국 운영 및 공동대표(○○○○○○○○장), 현재 4회 개최
- 국내 최초 무인비행장치 작업규정 및 표준품셈 연구 추진
- 국내 최초 UAV활용 공유지 모니터 체계 구축 가이드라인 추진
- LX-UAV 조종자 안전가이드 제작·배포

○ 국가 공모 사업 추진 및 민간 협업

- U-서비스 전자정부 사업(UAV활용 공유지 모니터 체계 구축) 공모 당선
 - ※ 6.4억 예산 확보 및 공사UAV 인프라 확보
- 국토부 UAV 신사업 안정성 인증 공모 당선(국토조사 대표 사업자로 선정)
 - ※ 민간협업으로 3개 업체와 공동 추진

○ 핵심 역량강화

- 전 지역본부 UAV 도입 및 후처리 S/W 도입
- 무인비행장치 관련 법령 현황 및 제도 개선 연구 추진
- LX-UAV 조종자 양성(현재 7명 국가자격소지자 배출)
- UAV조종 안전 전문가 초빙 비행 안전교육 실시(26명 교육)

□ 추진결과

- (새로운 기술 선도) LX기본 공간정보 구축을 위해 도엽단위 영상 해상도

및 후처리 시계열 데이터 축적 기반 마련

- **(역량강화)** 공모사업 추진으로 사업수행 노하우 및 자체 인프라를 확보하였고 최신 장비(고정익) 도입 및 운영으로 새로운 기술 습득
- **(공적기능 강화)** 민간 상생 및 공적 역할을 위해 UAV 촬영부분은 민간이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천하고, 공사는 데이터 품질을 검증하는 관리 기관으로의 역할 제고
- **(국가정책수립에 조력)** 선제적 · 적극적인 공모 사업 수주 및 표준화 · 제도화 추진으로 국가 정책수립 지원 및 조력

일련번호	2015-47
제 목	LX토지알림e를 통한 공공서비스 강화 및 정부 3.0 실현

□ 요 지

국민생활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LX토지알림e 앱으로 대피정보, 토지정보, 맛집정보, 지적측량수수료 정보 등 대국민 서비스 제공

○ LX토지알림e 운영으로 고객맞춤형 서비스 추진

- 대피정보는 공간분석을 통해 안전한 대피소 및 약국, 병원 위치정보 제공
 - 토지정보는 부동산 사기 예방 및 토지거래의 안전성 보장을 위해 관심토지에 대해 서비스를 신청하면 직접 방문하여 토지현장에 대한 정보 무료 제공
 - 맛집정보는 공사 직원이 직접 찾아낸 숨은 맛집정보 및 찾아가는 서비스
 - 지적측량수수료는 국민이 궁금한 종목별 수수료 비용을 알기 쉽게 제공
- ※ 2013년 4월 실시, 매년 서비스 기능개선 및 콘텐츠 개발(11월 말 기준 404,184건)

○ ㉠㉠㉠㉠원과 협업을 통한 정부 3.0 실현

- ㉠㉠㉠㉠원 부동산시장 가격 정보 앱의 토지면적 및 지가데이터 연계 지적측량수수료 자동 산출 및 기관별 배너에 앱 연동기능 개발 진행
- ※ 11.18(수)
- 2015년 공공기관 정부 3.0 평가(벤치마킹 10점, 기관 간 협업행정 12점) 실천과 편의성 및 실시간 정보 활용으로 기관 간 상호 실적 증가

○ 대국민 토지정보서비스로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역할 수행

- 토지정보 무료서비스로서 공사 직원이 직접 현장에 출장하여 토지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기획부동산 사기, 허위투자를 예방, 토지거래 안전성을 보장
- ※ 토지이용 상황에 대한 최신사진, 연속지적도면, 현장 설명 등

□ 추진결과

- (2015 올해의 앱 공공서비스 부문 대상 수상) ○○○○신문, ◆◆◆이 주최하고 ○○○○○○○부, ㉠㉠㉠㉠㉠부 등 후원 올해의 앱 선정

일련번호	2015-48
제 목	국가공간정보 통합 포털 구축

□ 요 지

- 한국국토정보공사로서의 위상 정립과 국토정보 기반 신성장 동력 확보의 일환으로 국가·공공·민간 공간정보 통합 및 포털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가공간정보 통합 포털」 구축 사업을 추진함

□ 내 용

○ 개요

- (추진배경) 공간정보 관련 법률 개정에 따른 공사의 역할 강화 필요
- (추진방향) [대표성] 한국국토정보공사 위상과 일치하는 대한민국 대표 공간정보통합 포털 구축
 - [소통형] 단방향 정보제공형 포털이 아닌 국가·공공·민간이 상호 소통하고 공유하는 양방향 정보교류형 포털
 - [전문화] 다양한 분야의 공간정보 관련 전문가가 지속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는 포털
 - [이·활용] 포털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각종 정보 간 융·복합이 가능한 포괄적 이·활용 정보제공 포털
 - [양방향 갱신체계] 국가공간정보 통합 포털과 국가공간정보센터 간 최신성 및 정확성 확보를 위한 양방향 갱신체계 구축
- (추진전략) 국가공간정보와 관련된 서비스 사이트들의 핵심 서비스 기능을 분석하여 단계별 흡수·통합하여 구축
 - * 1단계('15년) 표준프레임 구축 및 통합DB구축
- (추진목표) 국가·공공 및 민간에서 생산하고 있는 공간정보를 통합하여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활용 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시스템 구축

○ 추진 내용 및 실적

- 국가공간정보시스템 관리체계 개편 협조 요청(▲▲▲▲부, '14. 6. 17.)
- 국가공간정보 포털 통합 구축·운영 계획 통지(▲▲▲▲부, '15. 2. 3.)
- 전문기관 협의체 「국가공간정보 통합 포털 구축·운영에 관한 협약서」 체결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공사, 공간정보◇◇◇◇원, '15. 2. 23.)
- 경영정책위원회 개최 및 의결(△△△△실, '15. 3. 27.)
- 국가공간정보 통합 포털 구축 계획 수립(▽▽▽▽처, '15. 6. 4.)
- 통합 포털 구축용역 수행자 선정(●●●● 컨소시엄 '15. 7. 8.) 및 착수('15. 7. 15.)
- 국가공간정보 통합 포털 비전설명회 개최(여의도 ◇◇◇◇◇◇회 '15. 8. 25.)



비전설명회 전경

- 스마트 국토엑스포 홍보관 운영(▶▶동 ▼▼▼ Hotel '15. 9. 15.~17.)



국가공간정보 통합 포털 시범서비스 설명

□ 기대효과

- ▲▲▲▲부 국가공간정보센터와 국가공간정보 통합 포털 간 공간정보 데이터셋 연계 및 양방향 갱신체계 구축으로 국토정보 기반 신성장 동력 확보
- 국가공간정보 통합 포털 구축과 공간정보 융·복합 및 유통의 선순환 체계 확립으로 국가와 민간의 거버넌스 역할 수행
- 국가 및 민간에서 생산된 정보를 융·복합하여 유통하는 선순환 체계의 장(長) 마련으로 공간정보산업 활성화
- 공공서비스의 시의성 및 정확성 향상으로 행정업무 효율성 증대와 고유기능이 강화된 맞춤형 대국민 서비스 강화

□ 향후계획

- 단계적 구축: ‘15년(통합 포털 구축) - ‘16년(활용 허브 구축) - ‘17년(유통체계 확립)
- 국가공간정보 통합 포털 전면 서비스: ‘16. 1. 1. ~



국가공간정보 통합 포털의 역할



국가공간정보 통합 포털의 비전

일련번호	2015-49
제 목	공공기관 능력중심채용 경진대회 최우수기관 선정

1. 도입 배경

- 기존 전공필기시험 위주의 공사 채용제도 혁신에 대한 필요성
- 새 정부 출범과 함께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 사회 만들기’ 국정과제 발표에 따라 여러 가지 스펙초월 채용모델 대두
- 여러 가지 채용방법 중 90% 이상 전문기술직군인 공사 특징에 맞는 ‘핵심직 무역량 평가모델’ 도입(‘13.7)

2. 추진내용 및 과정

- 추진현황
 - ◇◇◇◇부 ‘핵심직무역량 평가모델’ 공공기관 최초 도입(‘13.7)
 - 채용 프로세스 진단, 입사지원서 설계, 면접도구 개발, 면접관 교육지원 등 정부지원 전문 채용컨설팅 진행(‘13.7~’13.12)
 - NCS 기반 능력중심 채용제도를 통한 신입사원 93명 선발(‘14.6)
 - ◇◇◇◇부 장관 NCS 채용 우수기관 현장 방문(‘15.1, ◇◇본부)
 - ⊕⊕⊕⊕부, ◇◇◇◇부 NCS 채용 우수사례로 선정(‘15.3)
 - NCS 채용 고도화 자체 컨설팅 진행(‘15.6~)
 - 공사 주최 스마트국토엑스포에서 NCS 인재채용관 개최(‘15.9)
 - NCS 기반 신입사원 채용 진행(‘15.10~)
 - NCS 채용 관련 각종 간담회, 설명회, 특강 등을 통해 우수사례 공유(‘15.1~)
 - 공공기관 능력중심채용 경진대회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상 수상(‘15.11)
- 채용제도 개선 주요내용

단계	기존 채용	직무능력중심 채용
서류전형	■ 스펙을 나열하는 입사지원서	■ 직무관련 사항(교육, 경험, 자격 등)만 적는 역량기반지원서
필기전형	■ 기업 공통 인적성검사 ■ 전공시험 위주	■ 직무별 직업기초능력평가 도입 ■ 직무지식검사
면접전형	■ 실무/임원면접으로 구분 ■ 전통적인 문답식 면접	■ 직무관련 경험면접, 상황면접 등 역량면접 도입

○ LX만의 진화하는 NCS



3. 성과 및 성공요인

○ NCS 채용의 성공적 정착요인

- 내부적 필요에 의한 자발적 도입으로 지속적 개선 가능
- 초기단계부터 컨설팅을 통해 공사에 적합한 채용 프로세스 설계
- 기존 지원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적용
- 공사 채용설명회 및 채용박람회에서 NCS에 대한 적극적 홍보

○ NCS 채용의 효과

- 허수 지원자 감소로 채용비용 절감(경쟁률 ↓ 응시율 ↑)
- 직무별 맞춤형 평가 가능
- 경력직 같은 신입사원 선발 가능(직무만족도 ↑ 이직률 ↓)

4. 향후 발전방안

○ NCS를 채용 외에 인사관리 다른 영역까지 확장

- 장기현장실습형(IPP) 일학습병행제 도입('15.9)
- 전보배치기준에 직무역량 평가 반영('15.1)
- 국토정보교육원을 활용한 신직업자격 개발 준비
- 직무능력표준 개발 참여(공간정보 융·복합서비스분야)

일련번호	2015-50
제 목	국세청 질의를 통한 매입세액 공제 항목 발굴로 비용 절감

□ 요 지

교육원 및 연구원 비용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통한 비용절감

○ 현황

- 현재 교육원과 연구원의 비용은 공사의 수익사업이 아닌 것으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 처리
- ※ 2014년 기준: 421백만원
- 2002년, 2007년, 2011년 국세청 세무조사 시 교육원과 연구원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경우 간주공급 처리하도록 처분
- 교육원 및 연구원의 기능 강화로 매년 관련 비용이 증가되고 있어 매입세액 관련 세법의 적정성 여부 검토 필요

○ 추진 내용

-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에 대한 국세청 서면 질의(2015. 6. 24)
 - 교육원과 연구원의 매입세액은 공사의 과세사업을 위한 활동에 수반된 것으로 부가세법 제39조에 따른 공제하지 않는 매입세액과 부가세법 시행령 제77조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해당되지 않음을 강조
- 매입세액 공제에 대한 국세청 회신(2015. 9. 3)
 - 외부수탁 교육용역 및 외부수탁 연구용역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부가세법 제38조에 따라 공제가 가능하며, 내부 교육용역과 연구용역의 경우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 기대효과

- 비용 절감
 - 매입세액 공제에 따라 연간 약 5억원의 일반경비와 교육원 신축과 관련한 약 100억원의 경비가 절감될 것으로 추정